

정책연구보고서 2016-42

특허법원 관할집중에 따른 대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임 성 복



연구진

연구책임

- 임성복 /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차례 -

제1장 서론	5
1. 연구 배경 및 목적	5
2. 연구 범위 및 방법	6
제2장 특허법원 관할집중 필요성 및 입법화 과정	8
1. 특허소송 관할 문제점과 관할집중의 필요성	8
(1) 특허소송 제도	8
(2) 특허소송 관할	8
(3) 특허소송 관할분리의 문제점과 관할집중의 필요성	10
2. 특허법원 관할집중의 입법화 과정 및 내용	11
(1) 관할집중 현황 및 문제	11
(2) 특허법원 관할집중 입법화 과정	12
(3) 특허법원 입법 주요내용	13
제3장 국내의 특허소송 동향 분석 및 수지 현황	16
1.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국제특허 소송 현황	16
(1) 법원 소재 국가별 지재권 분쟁 현황	16
(2) 기술분야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20
(3)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21
2. 외국 NPE와 우리기업간 국제 특허소송 현황	25
(1) NPE의 의미 및 목적	25
(2) 외국 NPE와 우리기업간 국제 특허소송 현황	25
(3) 기술분야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현황	28
3.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32
4. 국내법원 특허소송 현황	36
(1) 특허법원 사건처리건수	36
(2) 특허침해소송 법원별 처리 현황	40
(3) 국내 특허소송을 통해 본 시사점	40

제4장 특허법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행조건 및 해외사례 분석 41

1.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 41
 - (1) 특허법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행조건 41
 - (2)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집중 42
 - (3) 독일 기술판사제도를 통해 본 전문성 강화 45
 - (4) 변리사 공동 대리제도 50
 - (5) 정책적 시사점 51
2. 특허법원 해외 사례 분석 - 미국 53

제5장 특허허브도시 개념 및 정책적 시사점 60

1. 특허허브도시 개념 및 해외사례 60
 - (1) 특허허브도시의 개념 및 가치 60
 - (2) 특허허브도시 사례 분석 - 뮌헨을 중심으로 61
 - (3) 해외 추진동향 64
2. 특허허브도시의 선결조건 : 특허허브도시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구축 66

제6장 ‘특허허브도시 대전’ 분야별 대응전략 69

1. ‘특허허브도시 대전’ 거버넌스체계 구축 69
2. 특허전문화지구 지정 육성 71
3. 특허허브도시를 목표로 한 교육 및 홍보 확산 75
 - (1) 지식재산 교육을 바탕으로 한 특허허브도시화 추진 75
 - (2) 특허허브도시의 대내·외 전략적 홍보 및 역량 강화 방안 77
4. 특허-MICE의 연계를 통한 특허허브도시 브랜드 구축 79
 - (1) 대전의 MICE 산업 여건 79
 - (2) 포럼의 경제적 가치 및 대전의 MICE 산업 연계 80
5. 지식재산 관련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 84
 - (1) 대전지식재산센터의 위상 제고 84
 - (2) 지적재산권연구소 설립 87

제7장 추진사업 제안 및 로드맵 89

1. 추진사업 제안 89
2. 사업 로드맵 97

- 그림 목 차 -

<그림 2-1> 현행 소송체계	12
<그림 2-2> 특허등 지재권소송 관할제도 개선 전·후 비교	13
<그림 3-1> 국제특허소송 현황	16
<그림 3-2> 소재국가별 분쟁 현황	17
<그림 3-3> 기술분야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20
<그림 3-4>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승·패소 현황	22
<그림 3-5> 외국 NPE와 우리기업간 국제 특허소송 현황	26
<그림 3-6> 외국 NPE와 우리기업간 국제 특허소송 현황	26
<그림 3-7> 지식재산권 사용료 현황	32
<그림 3-8> 지역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33
<그림 3-9> 특허법원 사건 처리건수	36
<그림 3-10> 특허 실용신안 사건처리 건수	37
<그림 3-11> 디자인 사건처리 현황	37
<그림 3-12> 상표 사건처리 현황	38
<그림 3-13> 연도별 사건 현황	38
<그림 3-14> 특허 실용신안 연도별 사건현황	39
<그림 3-15>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현황	39
<그림 5-1> ‘특허허브도시 대전’ 개념도	67
<그림 6-1> 대전 특허전문문화지구 구성도	73
<그림 6-2> 발명테마파크 시설 구상안	74
<그림 6-3> 지식재산센터 비전 및 목표	84

- 표 목 차 -

(표 3-1) 국적별 특허소송 현황	18
(표 3-2) 기업형태별 특허소송 현황	19
(표 3-3) 법원 소재 국가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19
(표 3-4) 기술분야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21
(표 3-5) 연도별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22
(표 3-6) 국적별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23
(표 3-7) 기업형태별 국제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23
(표 3-8) 법원 국가별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24
(표 3-9) 기술분야별 국제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24
(표 3-10) NPE와의 연도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원고 투자 국적)	26
(표 3-11) 기업 형태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현황	27
(표 3-12) 법원 소재 국가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현황	28
(표 3-13) 분쟁을 제기한 주요 NPE	28
(표 3-14) 기술분야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현황	28
(표 3-15) 원고 투자 국적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29
(표 3-16) 연도별 NPE 분쟁 승·패소 현황	29
(표 3-17) 기업형태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30
(표 3-18) 기술분야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31
(표 3-19) 지식재산료 전체 통계	34
(표 3-20) 국가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35
(표 3-21) 특허침해소송 1심 지방 법원별 제소건수	40
(표 3-22) 특허침해소송(2심)법원별 현황	4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기구를 통하여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큰 위험을 회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출원이나 심판의 대리 또는 소송대리 등을 통해 자신의 특허내용을 잘 아는 기술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특허청과 법원의 조직을 개편 내지는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제도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현행 이원화된 특허소송 체계가 소송의 효율성, 판결의 전문성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소송 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특허의 유무효를 다루는 심결 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 ‘특허소송관할 집중’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다.

또한 국회내의 「대한민국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허사법체계 개선에 관한 요구가 있어 왔고, 그 결과 2015.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허소송 관련법(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 특허법원 관할 집중에 따라 종전 고법(5개소), 지방항소심(18개소)에서 진행되어 오던 침해소송이 2심 소송 전담법인인 대전광역시 소재 특허법원에서 2016. 1월부터 전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 소재의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법률 행정 및 관련 서비스가 증가할 전망이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청구 등 침해소송 관련 2심 소송이 대전 소재 특허법원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특허법원 관할 집중에 따른 대전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모색과 지식재산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환경분석과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특허허브도시로서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 다양한 정책적 방안의 수립 및 체계적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강점 즉 관련 기관의 집적이라고 하는 입지적 우위성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많은 요소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일련의 매우 긍정적인 환경 하에서 향후 대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른바 ‘특허허브도시 대전’을 목표로 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 내고,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특허법원 관할 집중의 의미 및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률 행정 수요의 증가와 관련분야 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가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판단하고

둘째, 특허법원 관할집중에 따른 긍정적인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충분히 활용하여 대전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특허 허브도시로서의 위상강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특허 관련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 및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 기관, 로펌, 법인회사 등의 대전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특허 관련 기관, 사업체의 공간적 밀집도 등을 분석하여 여러 기능별 특허전문화지구를 지정 육성하고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특허법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정보원, 대학, 기업 등 지역내 지식재산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특허 허브도시로서의 브랜드 강화 및 경제적 유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지역적 범위로 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대전의 지식재산서비스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서비스와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이라는 제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대내외적 환경과 특허분쟁

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전의 산업적, 경제적, 행정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특허분쟁의 특성과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특허법원 관련 제도와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경쟁요소를 도출하고, 특허법원 관할집중을 위한 그간의 과정과 관할 집중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또한 국내 및 대전의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관련 환경을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특허법원 관할집중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대전광역시 관점에서 경제적 유발효과와 산업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과 행정적 측면에서의 제도 및 조직의 정비 및 보완과 지원체계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허법원 관할집중을 매개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전광역시가 특허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도출하고, 분야별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및 조사통계분석

지식재산과 특허소송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수집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정리하며, 정부의 특허법원 관할집중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다.

특히 동북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제도적 측면의 변화와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특허 소송관련 경쟁력 요소를 검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정체성 확립을 통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전광역시의 환경적 요소 및 정책적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청취 및 분석

법원관계자, 변호사, 변리사,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관련 종사자 등과의 인터뷰, 관련 전문가 그룹과의 세미나를 통한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특허법원 관할집중 필요성 및 입법화 과정

1. 특허소송 관할의 문제점과 관할집중의 필요성

(1) 특허소송 제도

특허소송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된 권리의 설정, 소멸, 침해 등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특허에 관한 소송은 ①심결취소소송, ②특허침해(구제)소송, ③ 특허 관련 일반행정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실용신안법 제56조, 의장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정에 관한 소 등을 말한다.

2) 특허침해(구제)소송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에 따른 권리 구제에 관한 소송으로서 권리침해금지청구소송(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청구소송(특허법 제128조), 신용회복청구소송(특허법 제13조) 등이 있다.

3) 특허 관련 일반 행정소송

특허관련 일반 행정소송으로는 특허출원, 등록, 심판 등에 관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의 처분에 관한 불복소송, 특허권의 수용, 제한에 따른 보상결정에 관한 불복소송,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에 대한 불복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는 일반 행정소송의 법리에 따른다.

(2) 특허소송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 처리 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 소 제기를 할 것이며,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소에 응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관할은 재판권과 사무분담과는 다르다. 먼저 재판권은 법원으로서 심리,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며,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심리,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한 사무분담은 같은 법원 안에 여러 재판부가 있을 때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재판부가 어떠한 사건을 취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것이며, 관할은 외부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법원의 직무범위(재판권의 분담)를 정해 놓은 것이다.

2) 관할의 종류

관할은 분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관할의 결정 근거를 표준으로 한 분류이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관할이다. 여기에는 직분관할(직무분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정할(지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에 관계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을 말한다.

나)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전속관할이라 함은 법정관할 가운데서 재판의 적정, 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정해진 것으로, 오로지 특정법원에서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을 말한다. 전속관할은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법정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바꿀 수 없다. 즉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할이 여러 군데가 되는 경합이 생길 수 없으며, 관할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송(移)이 허용되지 않는다. 임의관할은 주로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그 위반이 있다하여도 항소심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상소심에서도 이를 이유로 원심을 취소할 수 없다.

다) 특허소송의 관할제도

법원조직법 제28조의45)에서는 특허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사건으로 특허법 제186조제1항(실용신안법 제55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제2항)이 정하는 제1심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허관련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는 특허법원의 관할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126조 이하의 특허권의 침해는 동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심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은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리고 특허관련 일반 행정소송의 경우는 법원조직법 제40조의 4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3) 특허소송 관할 분리의 문제점과 관할 집중의 필요성

1) 특허 침해소송의 의도적인 지연 가능

특허 침해소송에서는 주로 특허권의 유효·무효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특허권의 무효는 특허법에 의한 별도의 무효절차(무효심, 심결취소소송)를 통해서만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의 피고는 거의 예외 없이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판사는 일반 민사사건인 매매 청구소송에서 선결요건으로 계약의 무효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리,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설사 특허청이 발명의 신규성 등을 잘못 판단하여 부당한 특허권이 허여되었거나 또는 위법하게 심의 의결된 경우에도 이미 존재하는 특허권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관할 분담제도는 당사자의 소송 지연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허 침해소송 당사자, 특히 피고는 특허 침해소송 절차에서 명백한 권리를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항변을 제출하여 특허청에 특허권의 무효심을 신청하고, 다시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전략을 구사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허법원으로의 도피’는 가처분이 본안 심리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전처분에 의해서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신속·정확한 특허소송의 실현

특허 침해소송은 권리로서 등록 받은 특허발명 등과 권리자가 소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발명 등과의 기술 차이를 가려내어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 침해 금지 등의 각종 판결·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기술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판단 없이는 심판하기 어렵다.

기술문제에 생소한 일반법원의 법관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것은 심판의 적정성을 실현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성이라는 소송이념을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3) 특허법원의 전문성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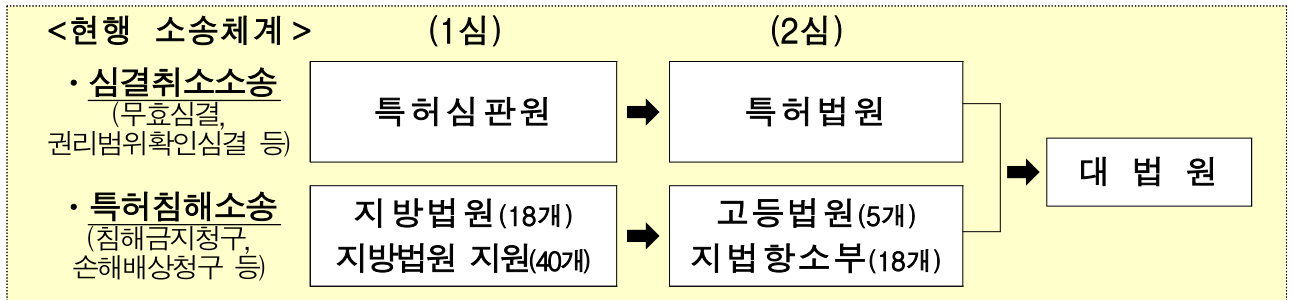
특허 침해소송은 기계, 금속,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등 기술과 관련된 소송으로서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특허 침해소송을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법원의 법관이 담당함에 따라 전문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는 생태적으로 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2. 특허법원 관할집중의 입법화 과정 및 내용

(1) 관할집중 현황 및 문제

- 1) 현황 : 현행 특허소송은 무효여부(심결취소소송)를 다루는 특허법원과 침해 여부 (침해소송)를 다루는 일반법원으로 이원화

<그림 2-1> 현행 소송체계



주: 2016년 1월1일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제도 개선제도 실행 전

2) 문제점 : 관할 이원화로 소송의 전문성·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 상존

가) 특허침해소송 시 수반되는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별도로 담당함에 따라 소송처리 지연

* 김벌리클라크(美) vs. 쌍용제지의 특허침해소송 : 11년 8개월 소요

나) 지방법원의 침해소송 처리 건수가 적어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한계

* 최근 5년간('07~'11) 특허 등 지재권침해소송 점유율 : 서울중앙지법 46.5%, 기타 지법 0~9.5%

다) 동일 특허에 대한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발생

(2) 특허법원 관할집중 입법화 과정

1) 지재위,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 (특위)운영('12.3~'13.9월)

* 관계부처(법무부·특허청), 산업계, 과학기술계, 유관직역(변호사·변리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특위, '특허소송관할 제도개선안' 도출('13.9월)

* 법무부, 특허청, 법원행정처, 변협, 변리사회 등 의견조회 ('13.10~11월)

3) 대법원, 제9차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통해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방안에 관한 건의문' 의결('14.4.1)

* 서울대전 등 2개 법원 관할 집중(지재위 의결안)→고법소재지 5개 법원 집중으로 수정 의결

4) 지재위, 대법원 협의 통해 소송 관할집중 관련 법률개정안 마련('14.8)

유관기관 (대법원(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 조회('14.9.2)

5) 관할집중 관련 법률 개정안 발표 (국회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 창립총회, '14.9.23)

6) 직법 (이상민의원, '14.9월) 및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정갑윤의원, '15.2월) 입법 발의

* 10.27 현재 법사위 제1소위 통과, 전체회의 상정 예상

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15.11.12) 및 전체회의 통과('15.10.28)

8) 국회 본회의 통과('15.11.12, '16.1.1. 시행)

(3) 특허법원 입법 주요내용

1) (1심) 특허침해소송 등의 1심은 각 고법소재지 5개 지법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 중복 관할 인정(민소법 제24조(지재권소송 관할)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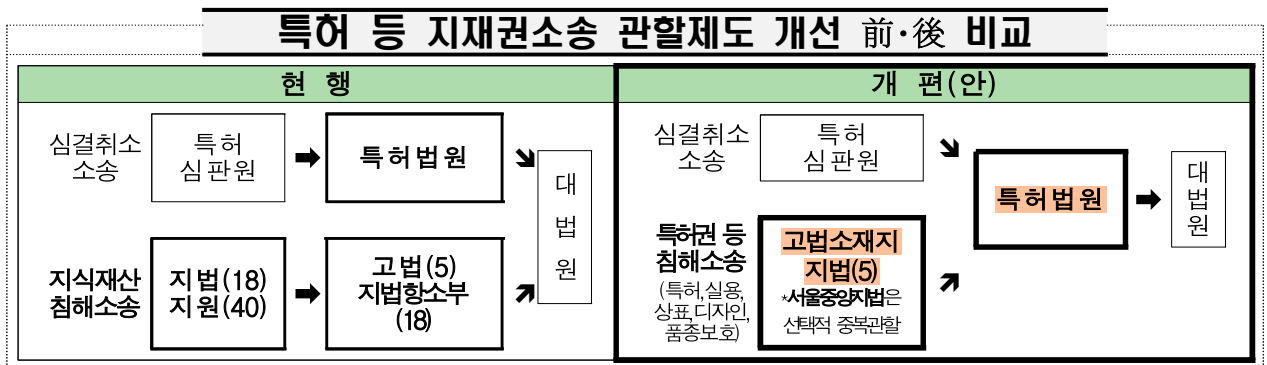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2) (이송)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속관할 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송 가능(민소법 제36조(지재권소송 이송) 개정)

3) (2심) 특허침해소송 등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개정)

* 특허권 등에 관한 심결 취소소송과 침해소송 관할의 일원화

<그림 2-2> 특허등 지재권소송 관할제도 개선 전·후 비교



참고1) 민사소송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지식재산권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u>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4조(지식재산권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u>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이하같음).</u></p> <p><u>②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u></p> <p><u>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u></p>
<p>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 법원은 <u>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u>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 법원은 <u>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u>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u>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② <u>제1항의 규정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③ <u>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u></p>
--	---

참고2) 법원조직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p> <p>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실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제1심사건</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p>	<p>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p> <p>1.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실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항, 상표법 제8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제1심사건</p> <p>2. <u>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심</u></p> <p>3.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p>

제3장 국내외 특허소송 분석 및 수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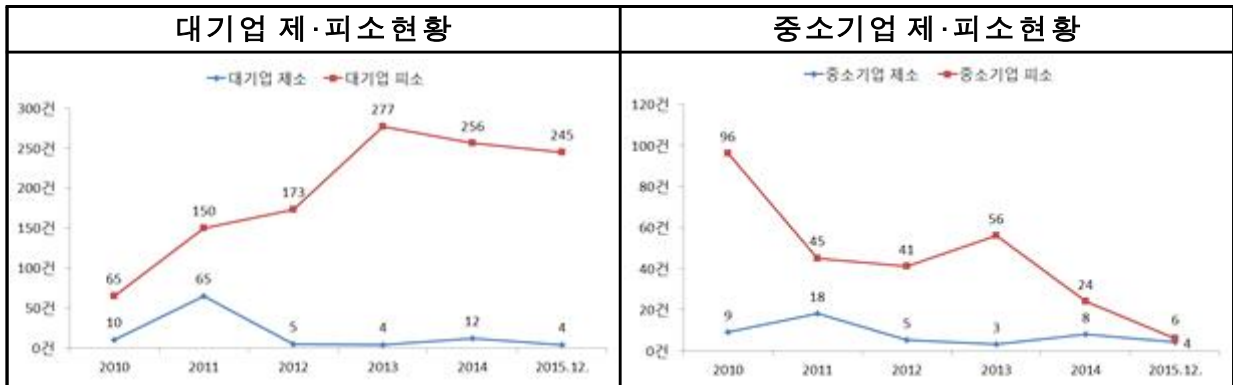
1.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국제특허소송 현황

외국기업과 우리기업간의 특허소송현황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경향을 도출하여 정책과 대응방안의 수립,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업국적별 지재권 분쟁 현황을 보면 미국, 일본, 독일, 대만 기업간의 소송이 전체의 87.9%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별 지재권분쟁 현황은 201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감소중인데 이는 '11. 9월 미국에서 발효된 개정 특허법(AIA, 등록 후 재심 및 당사자계 재심 도입 등)으로 특허무효 절차가 다양화된 것 등이 소송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소기업 피소건수는 2013년 이후 감소 중이며 2015년은 12월까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3-1> 국제특허소송 현황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1) 법원 소재 국가별 지재권 분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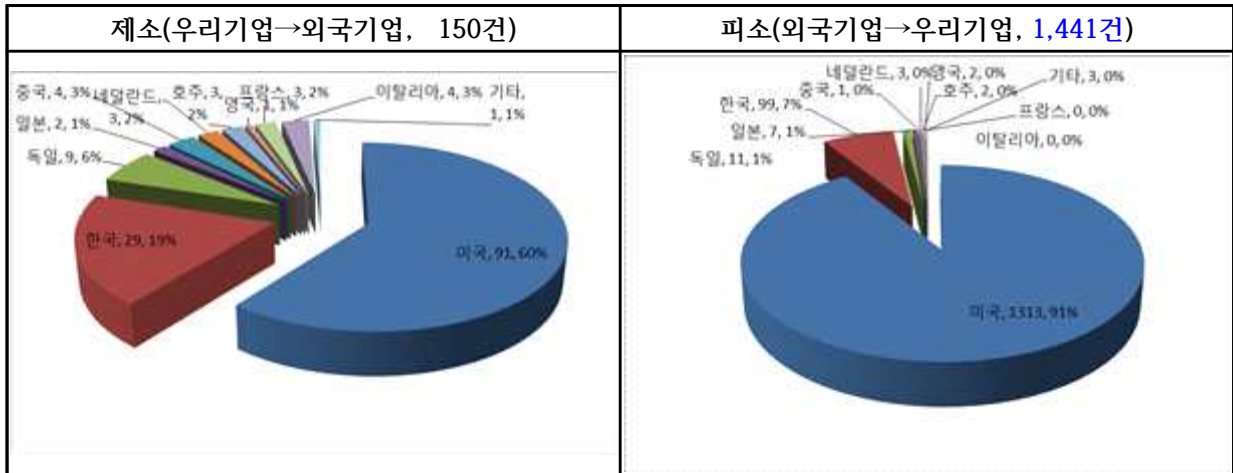
1) 법원 소재 국가별로는 미국 및 한국에서의 소송이 전체의 96.3%를 차지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을 제소한 경우는 150건이고 외국기업이 우리기업을 제

소한 것은 1,441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을 제소한 경우에도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소송은 20.19%에 지나지 않고, 미국에서 91.6%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에 피소된 1,441건의 경우에도 1,313건인 91%가 미국에서 소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의 특성 외에 다른 요인을 찾아내고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특허허브도시로의 육성전략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 소제국가별 분쟁 현황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2) 기업 국적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2013년 까지 지속적인 국제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4년, 2015년 잠시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식재산 분쟁은 향후 더욱 치열하게 전개 될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표 3-1) 국적별 특허소송 현황

(기준 : '10년~'15년 12월, 단위 : 건)

국 가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영국	인도	네덜란드	중국	기타	합 계
외국기업→ 한국기업	1,193	45	34	35	24	23	11	14	7	10	2	43	1,441
한국기업→ 외국기업	90	13	24	8	1	2	0	1	2	4	1	4	150
합 계	1,283 (80.6%)	58 (3.6%)	58 (3.6%)	43 (2.7%)	25 (1.6%)	25 (1.6%)	11 (0.7%)	15 (0.9%)	9 (0.6%)	14 (0.9%)	3 (0.2%)	47 (3%)	1,591 (100%)
'10	120	20	10	6	0	7	2	5	8	0	0	8	186
'11	183	20	43	9	5	2	1	4	1	5	1	6	280
'12	197	7	0	4	8	0	6	1	0	0	0	1	224
'13	303	4	0	13	12	6	2	1	0	0	0	1	342
'14	260	1	0	5	0	5	0	2	0	3	2	22	300
'15.12	220	6	5	6	0	5	0	2	0	6	0	9	245
합 계	1,283 (80.6%)	58 (3.6%)	58 (3.6%)	43 (2.7%)	25 (1.6%)	25 (1.6%)	11 (0.7%)	15 (0.9%)	9 (0.6%)	14 (0.9%)	3 (0.2%)	47 (3%)	1,591 (100%)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외국기업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구분

기타(47건) : 이스라엘(11건), 스페인(2건), 프랑스(4건), 핀란드(1건), 홍콩(1건), 뉴질랜드(1건), 덴마크(1건), 싱가포르(5건), 이탈리아(1건), 케이맨제도(8건), 룩셈부르크(10건), 호주(2건)

3) 기업 형태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기업별 형태로 분석하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의한 제소와 대기업의 피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3-2) 기업형태별 특허소송 현황

(기준 : '10년~'15년 12월, 단위 : 건)

기업 형태		'10	'11	'12	'13	'14	'15. 12	계
대기업	제 소	10	65	5	4	12	4	100
	피 소	65	150	173	277	256	245	1,166
소 계		75	215	178	281	268	249	1,266
중소· 중견기업	제 소	9	18	5	3	8	4	47
	피 소	96	45	41	56	24	6	268
소 계		105	63	46	59	32	10	315
기타	제 소	2	0	0	1	0	0	3
	피 소	4	2	0	1	0	0	7
소 계		6	2	0	2	0	0	10
합 계		186 (11.7%)	280 (17.6%)	224 (14.1%)	342 (21.5%)	300 (18.9%)	259 (16.3%)	1,591 (100%)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속한 기업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수치임. 기타는 연구소, 개인 등이 포함된 수치임

4) 법원 소재 국가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표 3-3) 법원 소재 국가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기준 : '10년~'15년 12월, 단위 : 건)

국 가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네덜 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탈 리아	기타	합계
외국기업→ 한국기업	1,313	99	11	7	1	3	2	2	0	0	3	1,441
한국기업→ 외국기업	91	29	9	2	4	3	3	1	3	4	1	150
합 계	1,404 (88.2%)	128 (8%)	20 (1.3%)	9 (0.6%)	5 (0.3%)	6 (0.4%)	5 (0.3%)	3 (0.2%)	3 (0.2%)	4 (0.3%)	4 (0.3%)	1,591 (100%)
'10	112	69	3	0	0	0	0	0	0	0	2	186
'11	177	56	16	8	3	5	5	2	3	4	1	280
'12	220	2	1	0	0	0	0	0	0	0	1	224
'13	338	1	0	0	1	1	0	1	0	0	0	342
'14	298	0	0	1	1	0	0	0	0	0	0	300
'15. 12.	259	0	0	0	0	0	0	0	0	0	0	259
합 계	1,390 (88.2%)	128 (8%)	20 (1.3%)	9 (0.6%)	5 (0.3%)	6 (0.4%)	5 (0.3%)	3 (0.2%)	3 (0.2%)	4 (0.3%)	4 (0.3%)	1,591 (100%)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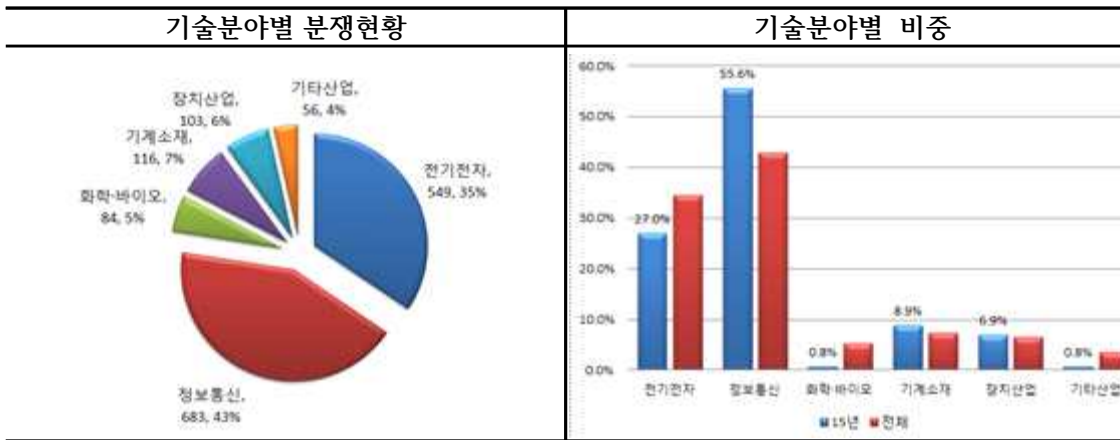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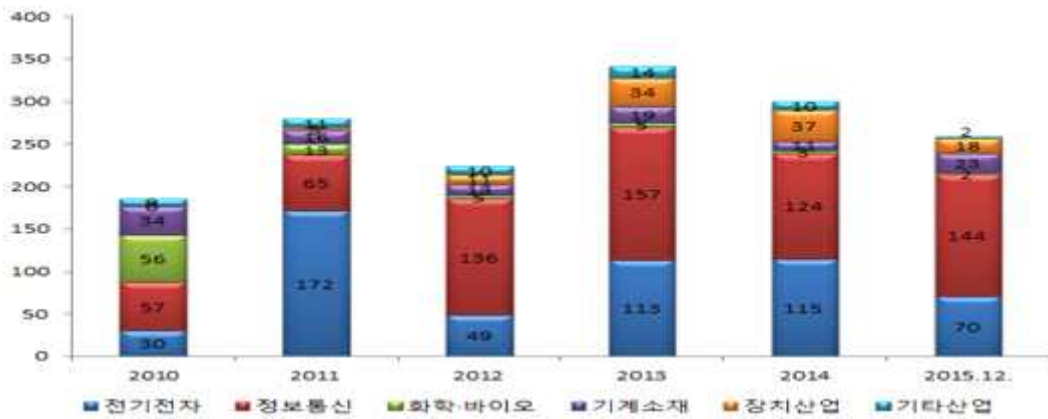
주: 기타(4건) : 대만(2건), 덴마크(1건), 뉴질랜드(1건)

한국 내 발생사건의 경우 법원을 통한 자료수집이 가능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 '12년 이후부터 언론을 통한 제한적인 정보 수집 중

(2) 기술분야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2011년-15년 12월까지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가 연도별로 전체소송 건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기술분야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1) 기술분야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표 3-4) 기술분야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기준 : '10년~'15년 12월, 단위 : 건)

분 야	'10	'11	'12	'13	'14	'15. 12	계
전기전자	30(1)	172(58)	49(1)	113(0)	115(11)	70(3)	549(74)
정보통신	57(7)	65(16)	136(4)	157(4)	124(2)	144(4)	683(37)
화학·바이오	56(8)	13(5)	5(2)	5(0)	3(1)	2(0)	84(16)
기계소재	34(3)	16(2)	13(3)	19(4)	11(4)	23(1)	116(17)
장치산업	0(0)	3(1)	11(0)	34(0)	37(2)	18(0)	103(3)
기타산업	9(2)	11(1)	10(0)	14(0)	10(0)	2(0)	56(3)
합계	186(21)	280(83)	224(10)	342(8)	300(20)	259(8)	1,591(150)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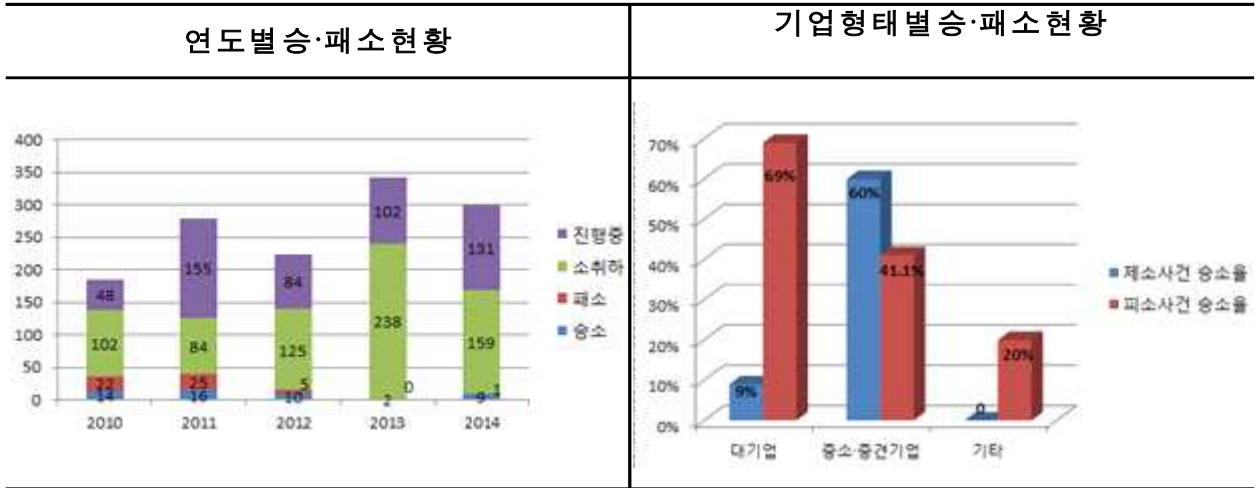
기술분야별 국제특허소송 현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군인 전기전자, 정보통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정책적 대안 특허법원, 및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3)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14년까지 제소된 사건을 추적한 결과 판결까지 이르지 않고 소송 중에 소를 취하(대부분 합의 취하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과반수(53%)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형태별 소취하 비율은 대기업(54%), 중소기업(52%)

<그림 3-4>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승·패소 현황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1) 연도별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표 3-5) 연도별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기준: '10년~'14년, 단위: 건)

구 분	'10	'11	'12	'13	'14	계
승 소	14	16	10	2	9	51
패 소	22	25	5	0	1	53
소취하	102	84	125	238	159	708
진행중	48	155	84	102	131	520
합 계	186	280	224	342	300	1,332
승소율*	38.8%	39.0%	66.6%	100%	90%	49%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승소율 = 승소 / (승소+패소)

2) 기업 국적별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표 3-6) 국적별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기준 : '10년~'14년, 단위 : 건)

구 분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덴	스위스	중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인도	기타	합 계
승 소	31	7	3	2	0	0	0	2	2	0	0	4	51
패 소	28	13	2	0	0	1	1	5	0	0	0	3	53
소취하	611	9	26	21	9	1	0	2	7	4	9	9	708
진행중	393	23	22	14	2	23	2	4	11	4	0	22	520
합 계	1,063	52	53	37	11	25	3	13	20	8	9	38	1,332
승소율*	52.5%	35%	60%	100%	-	0.0%	0.0%	28.5%	100%	-	-	57.1%	49%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기타(38건): 이스라엘(10건), 프랑스(4건), 스페인(2건), 뉴질랜드(1건), 이탈리아(1건), 덴마크(1건), 싱가포르(1건), 핀란드(1건), 홍콩(1건), 룩셈부르크(10건), 케이맨제도(6건) 승·패소 결정건이 '0'건 인 경우 승소율 계산이 불가능하여 '-' 표시

3) 기업형태별 국제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표 3-7) 기업형태별 국제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기준 : '10년~'14년, 단위 : 건)

기업 형태		승 소	패 소	소취하	진행중	합 계	승소율
대기업	제 소	1	10	37	48	96	9%
	피 소	29	13	510	369	921	69%
소 계		30	23	547	417	1017	56.6%
중소·중견기업	제 소	6	4	20	13	43	60%
	피 소	14	20	138	90	262	41.1%
소 계		20	24	158	103	305	45.4%
기타	제 소	0	2	1	0	3	0.0%
	피 소	1	4	2	0	7	20%
소 계		1	6	3	0	10	14.2%
합 계		51	53	708	520	1332	49%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속한 기업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수치임. 기타는 연구소, 개인 등이 포함된 수치임

4) 법원 국가별 국제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표 3-8) 법원 국가별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기준 : '10년~'14년, 단위 : 건)

구 분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중국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기타	합 계
승 소	28	17	1	2	0	1	0	0	2	0	0	51
패 소	8	29	1	7	1	3	0	1	1	2	0	53
소취하	652	54	1	1	0	0	0	0	0	0	0	708
진행중	457	28	6	10	4	2	3	2	2	2	4	520
합 계	1,145	128	9	20	5	6	3	3	5	4	4	1,332
승소율	77.7%	36.9%	50.0%	22.2%	0.0%	25%	0.0%	0.0%	66.6%	0.0%	-	49%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승·패소 결정건이 '0'건인 경우 승소율 계산이 불가능하여 '-' 표시

기타(4건) : 대만(2건), 뉴질랜드(1건), 덴마크(1건)

5) 기술분야별 국제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표 3-9) 기술분야별 국제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기준 : '10년~'14년, 단위 : 건)

구 분	승 소	패 소	소취하	진행중	합 계	승소율*
전기전자	13	22	187	257	479	37.1%
정보통신	16	10	333	180	539	61.5%
화학바이오	4	7	51	20	82	36.3%
기계소재	12	9	42	30	93	57.1%
장치산업	0	0	57	28	85	-
기타산업	6	5	38	5	54	54.5%
총합계	51	53	708	520	1,332	49%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승·패소 결정건이 '0'건인 경우 승소율 계산이 불가능하여 '-' 표시

2. 외국 NPE와 우리기업간 국제 특허소송 현황

(1) NPE의 의미 및 목적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on-Practicing Entities(이하 NPEs로 표기함)의 급증 및 특허 비즈니스의 증대로 인하여 국내 제조 기업들의 분쟁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NPEs의 특허 분쟁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자신이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업체들의 경쟁 업체로 분류되지 않고, 또한 많은 경우에 주요 특허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이들의 특허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보유 특허를 조기에 현금화시키기 위해 통상적인 라이선싱 협상 대신에 즉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라이선스를 압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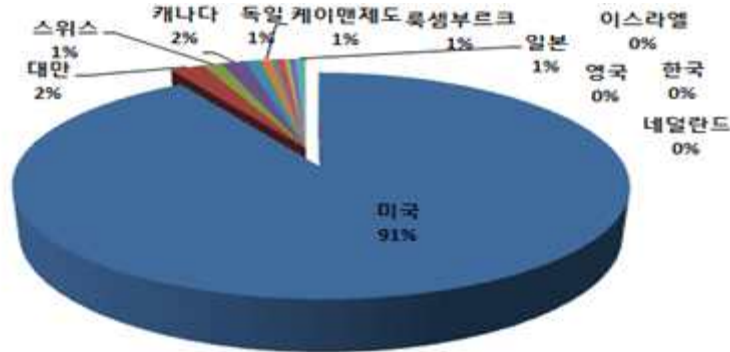
그런데 이들은 특허 비즈니스로 수입을 창출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업체들을 찾아 공격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 활동, 특히 미국 수출의 경우 커다란 특허 리스크로 부상되고 있어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NPEs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NPEs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대부분 간과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NPEs 관련 특허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자사와 관련한 NPEs 분쟁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NPEs 특허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NPEs 특허 분쟁에 사전 또는 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과 NPEs 소송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대전시로서는 대전의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적절히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외국 NPE와 우리기업간 국제 특허소송 현황

<그림 3-5> 외국 NPE와 우리기업간 국제 특허소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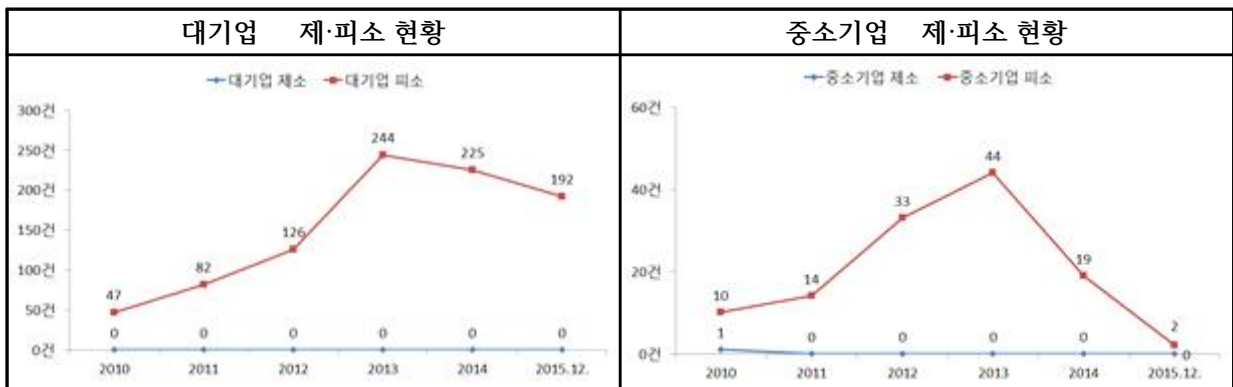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11. 9월 미국에서 발효된 개정 특허법(AIA, 등록 후 재심 및 당사자계 재심 도입 등)으로 특허무효절차가 다양화된 것 등이 소송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침

기업 국적별 지재권 분쟁 현황을 보면 상대 국적은 미국인 경우가 91.3%를 차지하고, 기업형태별 지재권 분쟁현황은 대기업 피소건수는 2013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피소건수는 2013년 이후 감소 중이며, 2015년은 12월까지 2건에 불과하다.

<그림 3-6> 외국 NPE와 우리기업간 국제 특허소송 현황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1) NPE와의 연도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원고 투자 국적)

(표 3-10) NPE와의 연도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원고 투자 국적)

(기준 : '10년~'15년 12월, 단위 : 건)

연 도	'10	'11	'12	'13	'14	'15. 12.	총 계
미국	47	95	155	266	218	168	949 (91.3%)
대만	4	0	4	8	3	3	22 (2.1%)
스위스	0	0	0	12	0	0	12 (1.2%)
캐나다	6	1	0	2	2	5	16 (1.5%)
룩셈부르크	0	0	0	0	10	0	10 (1%)
케이맨제도	0	0	0	0	6	2	8 (0.8%)
네덜란드	0	0	0	0	0	3	3 (0.3%)
독일	0	0	0	0	0	5	5 (0.5%)
이스라엘	0	0	0	0	3	0	3 (0.3%)
영국	0	0	0	0	2	2	4 (0.4%)
일본	0	0	0	0	0	6	6 (0.6%)
한국**	1	0	0	0	0	0	1 (0.1%)
총 계	58 (5.6%)	96 (9.2%)	159 (15.3%)	288 (27.7%)	244 (23.5%)	194 (18.7%)	1,039 (100%)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원고투자국적기준 : 기업 국적기준이며, 소송지는 주로 미국임

원고투자국적이 한국인 경우 한국 NPE와 외국기업간의 분쟁현황임

2) 기업 형태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현황

(표 3-11) 기업 형태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현황

(기준 : '10년~'15년 12월, 단위 : 건)

기업 형태		'10	'11	'12	'13	'14	'15. 12.	계
대기업	제 소	0	0	0	0	0	0	0
	피 소	47	82	126	244	225	192	916
소 계		47	82	126	244	225	192	916
중소· 중견기업	제 소	1	0	0	0	0	0	1
	피 소	10	14	33	44	19	2	122
소 계		11	14	33	44	19	2	123
기타	제 소	0	0	0	0	0	0	0
	피 소	0	0	0	0	0	0	0
소 계		0	0	0	0	0	0	0
합 계		58 (5.6%)	96 (9.2%)	159 (15.3%)	288 (27.7%)	244 (23.5%)	194 (18.7%)	1,039 (100%)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3) 법원 소재 국가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현황

(표 3-12) 법원 소재 국가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현황

(기준 : '10년~'15년 12월, 단위 : 건)

국 가	미국	대만	캐나다	독일	스페인	일본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합계
건수 (비율)	1,039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39 (100%)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4) 분쟁을 제기한 주요 NPE

(표 3-13) 분쟁을 제기한 주요 NPE

(기준 : '10년~'15년 12월, 단위 : 건)

번호	NPE 업체명	국적	소송건수	기술분야
1	American Vehicular Sciences	미국	54	장치산업
2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미국	30	정보통신
3	Orlando Communications	미국	24	정보통신
4	Affinity Labs of Texas	미국	22	정보통신
5	Golden Bridge Technology	미국	19	정보통신
6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대만	15	정보통신
7	Smartphone Technologies	미국	12	정보통신
8	Potter Voice Technologies	미국	12	전기전자
9	Beacon Navigation	스위스	12	장치산업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분쟁 다수 상위 NPE 중 12건 이상 소송 제기한 업체를 표시

(3) 기술분야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현황

1) 기술분야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현황

(표 3-14) 기술분야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현황

(기준 : '10년~'15년 12월, 단위 : 건)

기술분야	'10	'11	'12	'13	'14	'15. 12	총계	비율
전기전자	15	60	27	95	84	50	331	31.9%
정보통신	37	30	107	138	114	108	534	51.4%
장치산업	0	1	10	31	30	14	86	8.3%
기타산업	0	1	9	9	10	1	30	2.9%
화학바이오	0	0	0	0	0	0	0	0%
기계소재	6	4	6	15	6	21	58	5.6%
합 계	58	96	159	288	244	194	1,039	100%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3) NPE와의 특허소송에서 우리 기업의 승·패소 현황

1) 원고 투자 국적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표 3-15) 원고 투자 국적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기준 : '10년~'14년, 단위 : 건)

구 분	미국	대만	한국	스위스	캐나다	스페인	영국	독일	합 계
승 소	19	0	0	0	1	0	0	0	0
패 소	5	0	0	0	0	0	0	0	0
소취하	472	15	1	0	5	6	0	0	0
진행중	285	4	0	12	5	4	2	3	6
합 계	781	19	1	12	11	10	2	3	6
승소율	79.1%	-	-	-	100.0%	-	-	-	-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승·패소 결정건이 '0'건인 경우 승소율 계산이 불가능하여 '-' 표시

2) 연도별 NPE 분쟁 승·패소 현황

(표 3-16) 연도별 NPE 분쟁 승·패소 현황

(기준 : '10년~'14년, 단위 : 건)

구 분	'10	'11	'12	'13	'14	계
승 소	2	2	10	1	5	20
패 소	0	0	5	0	0	5
소취하	34	25	88	205	147	499
진행중	22	69	56	82	92	321
합 계	58	96	159	288	244	845
승소율*	100.0%	100.0%	50.0%	100.0%	100.0%	80%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승·패소 결정건이 '0'건인 경우 승소율 계산이 불가능하여 '-' 표시

승소율 = 승소 / (승소+패소)

3) 기업형태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표 3-17) 기업형태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기준 : '10년~'14년, 단위 : 건)

기업 형태		승 소	패 소	소취하	진행중	합 계	승소율
대기업	제 소	0	0	0	0	0	-
	피 소	20	5	422	277	724	80%
소 계		20	5	422	277	724	80%
중소· 중견기업	제 소	0	0	1	0	1	-
	피 소	0	0	76	44	120	-
소 계		0	0	77	44	121	-
기타	제 소	0	0	0	0	0	-
	피 소	0	0	0	0	0	-
소 계		0	0	0	0	0	-
합 계		20	5	499	321	845	80%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수취임 기타는 연구소, 개인 등이 포함된 수취임

4) 기술분야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표 3-18) 기술분야별 NPE와의 국제 특허소송 승·패소 현황

(기준 : '10년~'14년, 단위 : 건)

구 분	승 소	패 소	소취하	진행중	합 계	승소율*
정보통신	10	5	269	142	426	66.6%
전기전자	6	0	133	142	281	100.0%
기계소재	1	0	22	14	37	100.0%
장치산업	0	0	53	19	72	-
기타산업	3	0	22	4	29	100.0%
화학·바이오	0	0	0	0	0	-
합 계	20	5	499	321	84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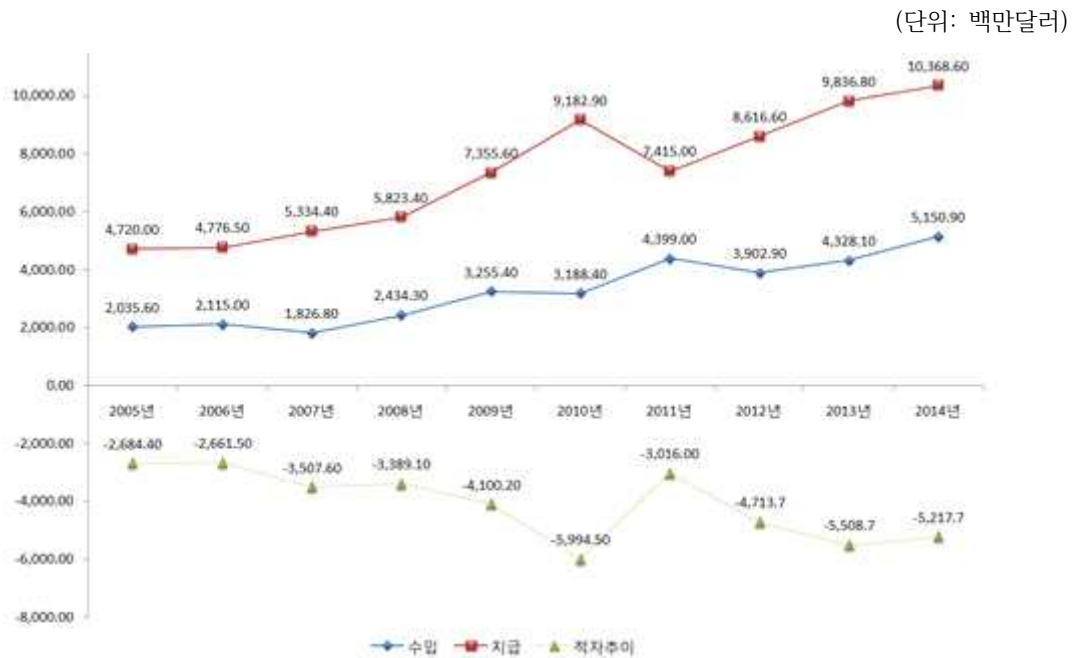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승·패소 결정건이 '0'건인 경우 승소율 계산이 불가능하여 '-' 표시

3.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액 및 수입액 모두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사용료 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자 규모는 최근 2년간 52~55억 달러(5조 8천억원~6조 2천억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3-7> 지식재산권 사용료 현황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수입 : 국외 기업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로 국내 기업에 지불한 금액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 : 국내 기업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로 국외 기업에 지불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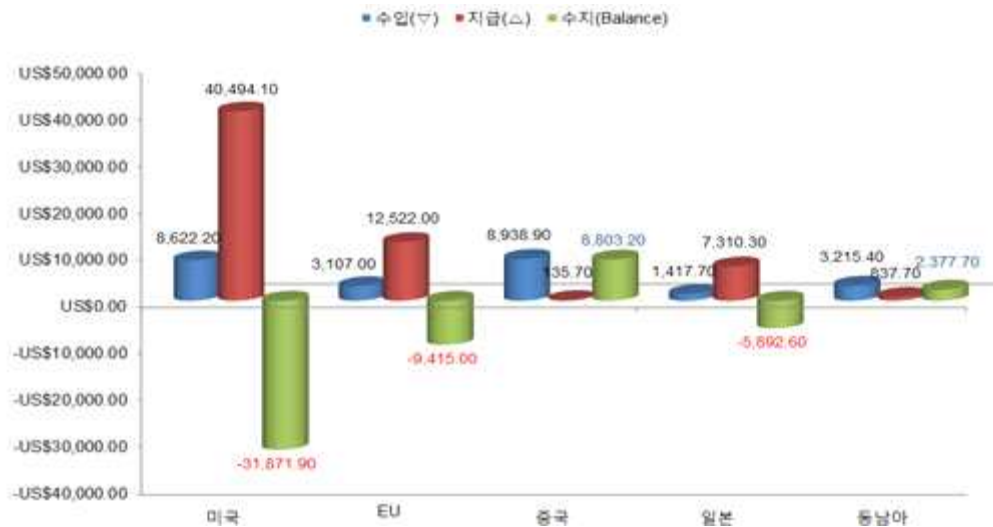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 : 사용료 수입에서 사용료 지급을 뺀 차액

1) 지역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05년~'14년)

국가별로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살펴보면 미국이 '05년부터 10년간 31,871.90 백만달러의 적자, EU가 9,415백만달러 적자, 일본이 5,892백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기술 선진국들이 오히려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결국 기술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해외 지식재산권의 수입, 활용을 통해 기술사업화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8> 지역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단위: 백만달러)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2) 전체 통계

(표 4-19)는 2005년 이후 10년간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료 수입과 지급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매년 약 40-50억 달러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표 3-19) 지식재산료 전체 통계

(단위: 백만달러)

연도	적자추이	수입	지급
2005년	-2,684.40	2,035.60	4,720.00
2006년	-2,661.50	2,115.00	4,776.50
2007년	-3,507.60	1,826.80	5,334.40
2008년	-3,389.10	2,434.30	5,823.40
2009년	-4,100.20	3,255.40	7,355.60
2010년	-5,994.50	3,188.40	9,182.90
2011년	-3,016.00	4,399.00	7,415.00
2012년	-4,713.70	3,902.90	8,616.60
2013년	-5,508.70	4,328.10	9,836.80
2014년	-5,217.70	5,150.90	10,368.60
합계	-40,793.40	32,636.40	73,429.80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 출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3) 국가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한편 동 기간 동안의 한국과 미국, EU, 일본, 중국 및 동남아와의 국가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EU, 일본 등 기술선진국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수지 적자, 중국, 동남아 등 상대적 기술후진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그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0) 국가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단위: 백만달러)

연도	미국			EU			중국		
	수지	수입 (미국→한국)	지급 (한국→미국)	수지	수입 (EU→한국)	지급 (한국→EU)	수지	수입 (중국→한국)	지급 (한국→중국)
2005	-2,113.9	790.5	2,904.4	-796.2	148.6	944.8	503.6	528.5	24.9
2006	-2,400.9	541.1	2,942.0	-759.9	273.2	1,033.1	767.3	772.7	5.4
2007	-2,580.5	656.3	3,236.8	-945.5	190.0	1,135.5	479.6	494.7	15.1
2008	-3,043.8	533.8	3,577.6	-909.0	325.5	1,234.5	1,068.3	1,077.8	9.5
2009	-3,301.4	1,263.9	4,565.3	-976.1	374.5	1,350.6	909.8	919.7	9.9
2010	-4,983.2	796.0	5,779.2	-1,509.2	465.2	1,974.4	1,067.5	1,089.6	22.1
2011	-2,992.4	1,571.5	4,563.9	-990.9	500.8	1,491.7	1,269.4	1,290.0	20.6
2012	-4,865.9	1,180.0	6,045.9	-1,080.9	356.8	1,437.7	1,224.8	1,238.6	13.8
2013	-5,589.9	1,289.1	6,879.0	-1,447.3	472.4	1,919.7	1,512.9	1,527.3	14.4
2014	-5,254.0	849.7	6,103.7	-2,510.4	427.3	2,937.7	1,899.6	1,940.3	40.7
합계	-37,125.9	9,471.9	46,597.8	-11,925.4	3,534.3	15,459.7	10,702.8	10,879.2	176.4

연도	일본			동남아		
	수지	수입 (일본→한국)	지급 (한국→일본)	수지	수입 (동남아→한국)	지급 (한국→동남아)
2005	-415.1	163.7	578.8	266.9	342.2	75.3
2006	-456.2	97.2	553.4	255.3	318.1	62.8
2007	-540.3	84.3	624.6	245.2	336.4	91.2
2008	-657.5	97.7	755.2	216.8	297.0	80.2
2009	-993.9	134.1	1,128.0	225.3	309.7	84.4
2010	-935.6	171.4	1,107.0	305.8	388.1	82.3
2011	-822.8	201.0	1,023.8	296.7	429.8	133.1
2012	-563.9	225.2	789.1	308.0	430.9	122.9
2013	-507.3	243.1	750.4	257.7	363.2	105.5
2014	-549.0	308.5	857.5	920.4	1,117.9	197.5
합계	-6,441.6	1,726.2	8,167.8	3,298.1	4,333.3	1,035.2

자료: 특허청 2016년1월 국제특허분쟁 통계

주: 출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 국내법원 특허소송 현황

(1) 특허법원 사건처리건수

1) 사건처리 건수

2014년 9월-2015년 8월까지 특허법원 사건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1년간 특허(실용신안) 건수는 508건, 상표 건수는 273건, 디자인 66건, 기타 2건 등 모두 849건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직전 1년간의 사건 처리건수와 비교하면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특허법원 사건 처리건수



자료:특허법원 사건통계

2) 특허·실용신안 사건 처리 현황

한편 특허·실용신안 사건 처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9월-2015년 8월까지 일년간 등록무효 208건, 거절 결정 169건, 권리범위 확인 125건, 기타 6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림 3-10> 특허 실용신안 사건처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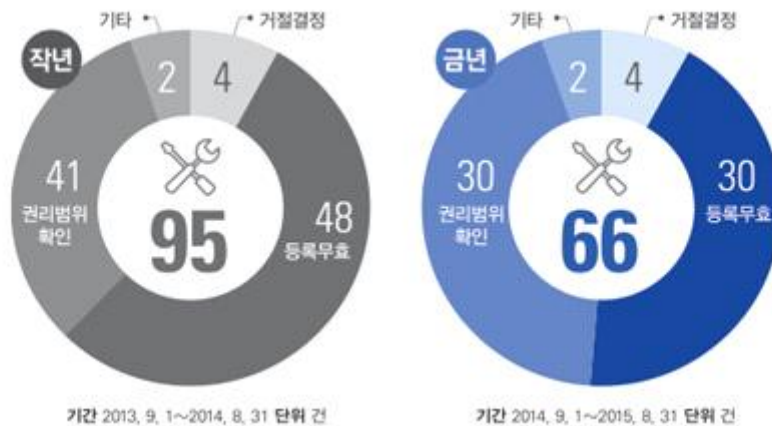


자료: 특허법원 사건통계

3) 디자인 사건 처리 현황

같은 기간 동안 디자인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등록무효와 권리범위 확인이 모두 30건, 거절 결정 4건, 기타 2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3-11> 디자인 사건처리 현황



자료: 특허법원 사건통계

4) 상표 사건 처리 현황

같은 기간 동안 상표 사건 처리 현황에 있어서는 등록무효 103건, 거절결정 73건, 등록 취소 83건, 권리범위 확인 14건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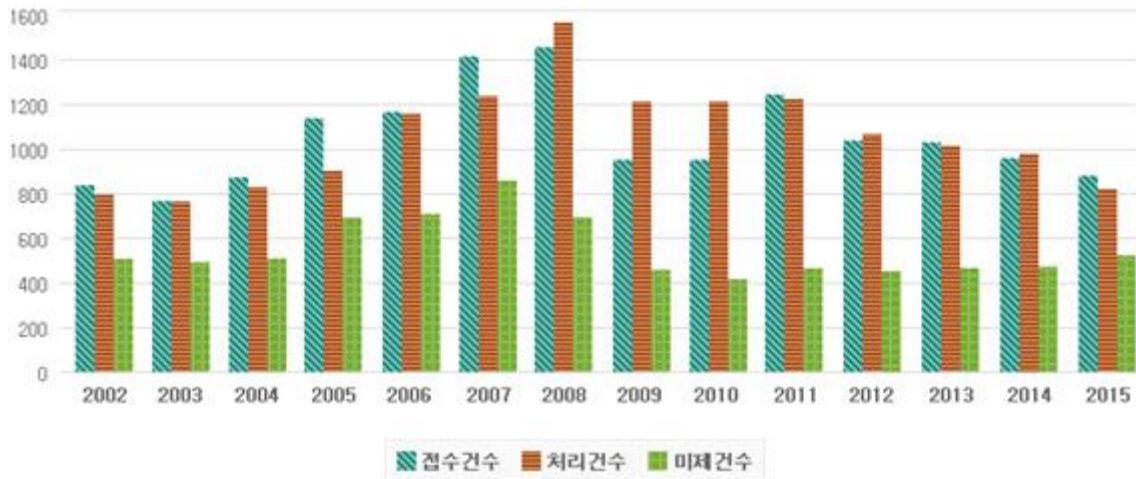
<그림 3-12> 상표 사건처리 현황



자료: 특허법원 사건통계

5) 연도별 사건 현황(전체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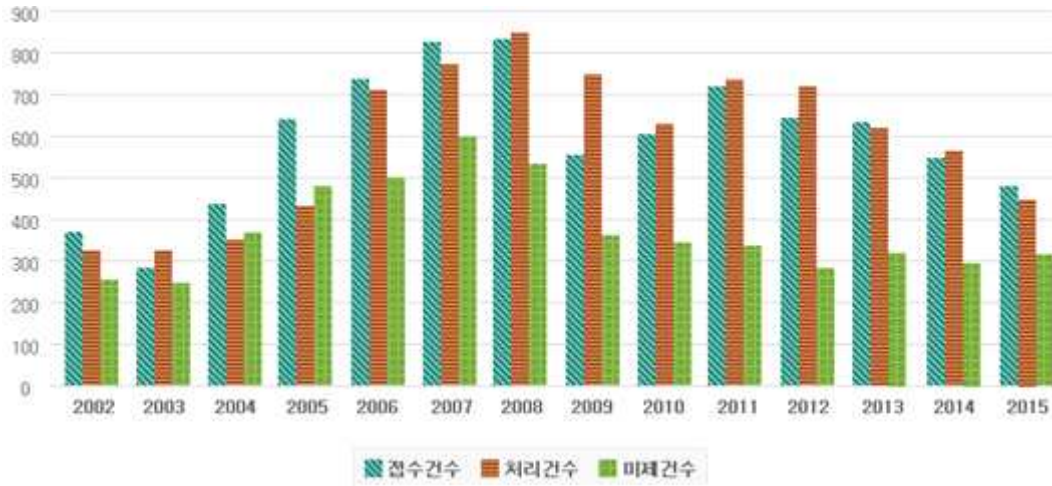
<그림 3-13> 연도별 사건 현황



자료: 특허법원 사건통계

6) 연도별 사건 현황(특허 · 실용신안)

<그림 3-14> 특허 실용신안 연도별 사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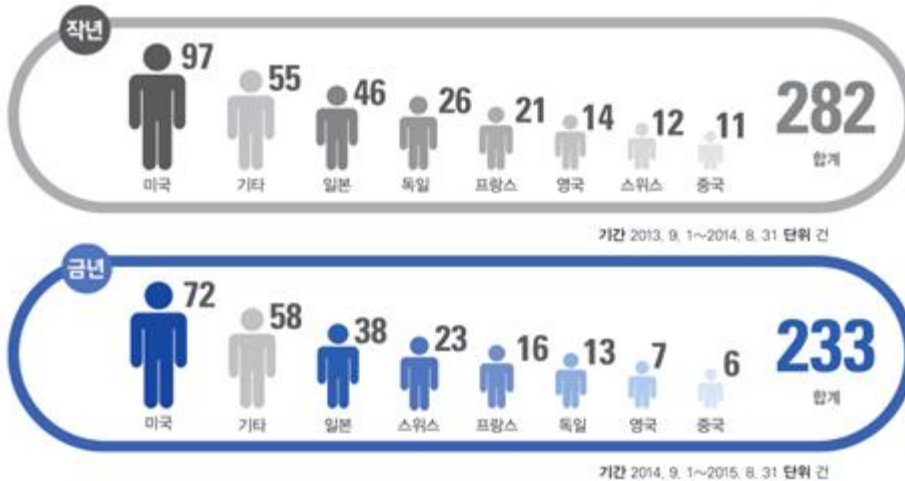


자료: 특허법원 사건통계

7)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현황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의 국가별 사건수는 미국이 97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기술선진국과의 분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3-15>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현황



자료: 특허법원 사건통계

(2) 특허침해소송 법원별 처리 현황

1) 특허침해소송 1심 지방 법원별

특허침해소송의 지역별 건수는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대전의 경우 14건으로 부산, 광주, 울산과 비교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21) 특허침해소송 1심 지방 법원별 제소건수

관할지법	서울중앙	수원지법	서울남부	대구	인천	대전	서울동부	의정부	부산	청주	광주	서울북부	서울서부	창원	울산	합계
제소건수	213	38	30	26	22	14	13	10	9	8	7	7	6	4	1	408

자료: 특허침해소송 선고연도별 현황, 특허청

2) 특허침해소송(2심) 법원별 현황

한편 특허침해소송(2심)의 법원별 현황을 보면 대전고법이 10건으로 대구, 부산, 광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2) 특허침해소송(2심)법원별 현황

관할법원	서울고법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합계
2심	155	10	7	5	2	179

자료: 특허침해소송 선고연도별 현황, 특허청

(3) 국내 특허소송을 통해 본 시사점

특허법원 관할집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기대하기 위해선 2심의 침해소송이 많아야 하는데, 전체 건수가 179 건이라는 것은 특허법원 관할집중의 향소심을 통한 경제적 유발효과나 파급효과 보다는 상징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이미지를 활용하는 측면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특허법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행조건 및 해외사례 분석

1.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

(1) 특허법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행조건

지적재산권은 산업·과학적 발명과 문학·예술적 창작 등과 같이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생산물에 대하여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리이다.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국제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도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 산업재산권심판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는 논거 아래 이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1998년 3월 1일부터 고등법원격인 특허법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1994년 7월 27일 개정 법원조직법 제28조의2 내지 4, 부칙 제1조 참조). 2016년부터는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통해 전문성 신속성 효율성 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상황이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의 핵심은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 자체에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쟁송에 있어서 기술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의 사이클이 효과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예산 확대,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제 및 금융체제의 정비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의 사이클은 어느 한 쪽의 저효율이 전체 사이클의 효율을 좌우한다. 이 가운데 창출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한 주장은 보호이든 활용이든 창출이 돼야 가능하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지당한 주장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의 창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창출과 비교하여 보호는 어떤 수준인가? 창출역량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

의 수준보다는 높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창출된 지식재산도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다양한 판결과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보호가 전제 되어야 후속적으로 활용이 활발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활용은 보호가 전제 되었을 때 그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가 핵심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선진국의 사례와 특허업무에 관련 있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의 수렴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집중

1) 특허분쟁해결의 적정성·신속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경쟁력 확보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특허에 관한 법적 분쟁은 특허를 받는 문제를 둘러싼 다툼, 즉 ‘특허심판’과 특허권이 침해 됐을 때 법적구제 문제를 다루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누어진다. 특허침해소송은 더 이상 특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침해금지를 청구하거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 포함된다.

이 두 가지 소송 가운데 특허심판의 제2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고등법원이 제2심을 맡고 있어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도 마땅히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해야 한다. 이는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재판이 적정·타당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특허법원을 설립한 취지에도 맞는 일이다. 또한 특허법원 판사들은 대체로 일반 법원에서도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허침해소송을 다루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출범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역대 특허법원장들이나 학자,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법학자 및 과학기술자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몇 해 전 범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하고, 대전·충남지역의 국회의원과 대학총장, 각종 단체 등을 중심으로 범시민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이 결실을 보아 2002년 10월 5일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22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회가 ‘불가’ 입장을 정하고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대전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 부산 . 광주 . 서울 등의 1심 법원에서 접근하기도 이상적이다. 물론 관할집중의 이면에는 관련 법조인(변호사, 변리사)들과 특히 재경법조인(在京法曹人)의 이해관계가 얽히기도 한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당사자인 과학기술자, 발명가 그리고 국민이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허소송에 관여하는 변호사나 변리사 그리고 대기업의 본사가 대전보다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을 대전으로 이전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 실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하여 지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기술.특허타운으로 특성화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의 국가적 중요성에 비교한다면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법률서비스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개혁이 못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경제.행정.교육.산업.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는 가히 전광석화와 같이 빠르다.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술판단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특허사건에 대한 기술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술심리관을 둔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제1심을 전속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도권에 몰린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서울의 기형적 비대화를 막고 인구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시적 안목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2) 외국의 예

① 독일은 법률 전문가인 법률판사와 기술 전문가인 기술판사가 합동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와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특허침해구제소송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방 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허침해구제소송의 항소심 즉 제2심은 각 주의 주 고등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이 소송의 1심도 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는데 독일이 연방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치구조 때문이다. 연방제에 따라 재판권을 배분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특허침해소송 1,2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95년과 96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세데문트 트라이버 독일 연방특허법원장은 “독일이 특허침해구제소송을 전속관할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적인 실수 때문”

이라고 전제하고 “연방특허법원이 설립될 당시 재정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각 주의 민사법원들이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관할을 연방특허법원으로 넘겨주는 것을 거부했다. 이것은 커다란 단점이며, 여러 법원들이 서로 관련이 있거나 중복되는 사건을 제각각 다룬다면 서로 상충되는 판결이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고 이는 판결의 질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독일의 연방특허법원을 모델로 해 오스트리아는 최고특허.상표재판소를, 스웨덴도 연방특허법원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② 영국의 경우 77년 설립된 특허법원과 91년 설립된 특허지방법원은 특허청장 처분 불복심판과 특허침해소송 모두에 대한 관할권은 가지고 있다. 재판부 구성도 모두 단독판사가 부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한다.

③ 미국의 특허법은 연방법이어서 주법원이 다루지 못한다. 특허침해구제소송 1심부터 연방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특허침해소송 2심은 연방구역관할고등법원(CAFC)에만 항소할 수 있다. CAFC로만 항소심을 집중시킨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 저 법원 돌아다니며 자기에 게 유리한 견해를 취하는 법원을 골라 제소하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결과 13번째 연방고등법원이 된 CAFC는 다른 12개 연방고등법원들이 지역관할에 따라 관할권을 나눠 가진 것과 달리 오직 특허.관세.정부상대 손해배상소송 등만을 관할하는 전국 관할의 고등법원이다.

④ 일본은 특허법원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관련 사건은 민사법원에서 판결한다. 특허청장의 심판에 불복하는 특허심결취소소송의 경우 사실상 도쿄고등재판소가 1심이 된다.

이 고등재판소에서 3개 재판부에서만 특허심결취소소송을 관할하며 부장판사는 특허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판사 중에서 선발해 정년 또는 퇴직 때까지 계속 특허관련 사건만을 맡긴다. 판사를 보좌하는 기술조사관도 특허청에서 경력 10년 이상 된 기술조사관 중서 선발한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특허침해구제소송 1심은 東京과 大阪地方裁判所에서 관할하며 2심은 東京高等裁判所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두 재판소가 특허침해소송 2심을 관할하는 이유는 60년대 중반부터 기술조사관을 파견 활용하고 있어 특허침해구제소송의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독일 기술판사제도를 통해 본 전문성 강화

1) 독일 연방법원의 조직과 기능

가) 연혁

독일연방특허법원은 1961년 7월에 설립되었다. 독일연방특허법원은 특허·실용신안·의장 등 산업재산권과 토포그래피(Topographie), 식품의 품종 보호와 관련된 쟁송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허법원이다. 독일연방특허법원은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다. 독일에서 산업재산권을 허여하는 주무관청은 독일 특허청이다.

우리나라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과거 독일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허여에 대하여 재심을 하는 기능도 하였다. 즉, 독일 특허청에는 항고재판부가 있었다. 그런데 무효심판부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항고재판부의 산업재산권 허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독일 특허청의 항고심판부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독자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은 연방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재판권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소송이 1959년 뮌헨 지방행정법원에 제기되었다.

독일연방기본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어떠한 행정관청도 스스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행정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반드시 법원에서 사법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최종심인 연방행정최고법원은 독일 특허청의 심판이 법원조직에 의한 정규소송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종전 독일 특허청에서 행하던 모든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행정법원의 관할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기술전문적인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속한 재판이 요청된다. 이 점에 주목하여 특히 발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과거 독일 특허청에서 심판업무를 담당한 유능한 기술전문가를 새로운 재판제도 아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특허재산권 분쟁에 대하여 고등법원격인 연방특허법원 제도를 새로이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나) 조직과 기능

□ 조 직

다른 일반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연방특허법원은 합의체인 재판부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연방특허법원에는 30개의 재판부가 있다.

- ① 16개의 기술항고부(특허권 허여와 관련된 항고사건을 담당)
- ② 3개의 무효부(특허권과 권리보호 등의 연장의 무효와 강제실시권에 관한 사항을 담당)
- ③ 실용신안과 토포그래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1개 재판부
- ④ 의장권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1개 재판부
- ⑤ 작물의 품종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1개 재판부
- ⑥ 8개의 상표항고부가 그것이다.

재판부의 구성은 각 재판부에 따라 다양하나 기술문제와 관련된 소송,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토포그래피와 식품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송에는 일반판사와 후술하는 기술판사가 동격으로 함께 참여한다.

특히 기술항고부의 재판장은 기술판사로 임명된다. 일반사항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상표항고부, 의장권과 관련된 사항과 일반적인 법률문제를 다루는 재판부뿐이다. 여기에는 3명의 일반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판사는 주로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거나 또는 권리침해소송을 전담한 법관 중에서 임명된다. 현재 연방특허법원에 재직하는 판사수는 모두 1백41명으로 그중 일반판사는 62명, 기술판사는 79명이다.

□ 기 능

연방특허법원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이다. 연방특허법원은 산업재산권의 허여와 존속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 재판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산업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이라는 점이다.

① 산업재산권에 관한 특허법원으로서의 기능

연방특허법원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쟁송을 전속 관할하는 특별법원이다. 산

업재산권을 허여하는 주무관청이 독일 특허청이라면 이에 대응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쟁송을 전담하기 위한 법원이 연방특허법원이다.

최근 유럽 특허청이 설립됨에 따라 특허법원의 관할도 확대되었다. 예컨대 독일지역에도 유효한 유럽 특허권이 허여되었다면 이에 대한 무효소송은 연방특허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연방특허법원에 집중케 함으로써 연방특허법원은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산업재산권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연방특허법원의 분쟁해결능력은 그 처리건수에서 잘 나타난다. 1993년에 연방특허법원은 특허권과 관련된 소송을 약 1천8백건 처리하였으며,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을 약 2천건, 실용신안과 관련된 소송을 약 80건 처리하였다.

그러나 과거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로 있던 침해소송은 특허법원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각주의 재정상의 이해가 대립되어 특허법원의 관할로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각주의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의 허여와 존속문제를 다루는 연방특허법원의 재판과 산업재산권 침해여부를 다루는 일반 민사법원의 재판은 그 사안이 중복되거나 또는 적어도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를 별개의 법원에서 취급함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종국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컨대 당사자간의 특허권에 관한 무효소송에 있어서 특허권의 의미에 관한 연방특허법원의 판단은 일반 민사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침해소송을 일반 민사법원에 둔 것은 독일 특허쟁송제도의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② 연방특허법원은 2심인 고등법원격으로 설치

일반적인 삼심제 아래서 일심의 절차를 줄인 것이다. 따라서 연방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2심으로서의 연방특허법원은 사실심과 법률심의 기능을 한다.

2) 기술판사제도

가) 도입의 배경

연방특허법원은 기술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쟁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연방특허법원이 설립될 당시 기술판사는 독일특허청의 항고재판부와 무효심판부에 소속되었던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 심판부는 연방특허법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체되었다.

이는 법조인 중에서만 판사로 임명되는 종전의 제도아래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조치였다. 기술판사 도입의 결정적인 이유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핵심내용이 고도의 복잡한 기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나) 기술판사의 지위

기술판사는 재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판사는 판사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감정인과는 달리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판사와 동격으로 재판에 관여하게 된다. 기술판사의 기술전문지식과 일반판사의 법률지식은 연방특허법원의 기술과 관련된 소송의 전 과정, 즉 구두변론의 준비에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서로 긴밀히 보완되고 있다. 특히 기술항고부에서는 기술판사를 재판장으로 임명한다.

기술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여야 하고 적어도 5년간 산업체의 실무경험과 필요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요구된다(독일 특허법 제26조 제2항, 제65조 제2항).

연방특허법원의 기술판사는 예외 없이 독일 특허청의 심사관 중에서 충원되고 있다. 독일 특허청의 약 7백명의 심사관중에서 심판경험이 풍부하고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 기술판사로 임명된다. 더 나아가 특허청과 연방특허법원의 인사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의 심사관→특허법원의 기술판사→특허청 조사국장→특허법원 기술부의 재판장의 순서로 승진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순환주기는 통상 4 내지 5년 정도이다. 특히 기술판사라도 특허청에서 심사국을 이끈 경력이 없는 자는 곧바로 특허법원의 재판장으로 승진되는 길이 억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사교류를 통하여 특허청과 연방특허법원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가능하고 또한 기술판사제도 도입에 따른 마찰을 극소화하고 있다.

다) 기술판사제도의 시사점

독일의 경우 기술판사제도를 처음부터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심리관으로 재판에 보조하는 역할을 주고 있다. 법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과학기술입국 또는 과학기술자의 지위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술판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만하다.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체제를 가진 미국과는 달리 법학교육의 기반만을 가진 독일 법조의 경우에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독일 특허법원의 특수성이 돋보이는 제도로서 기술적 관련이 있는 모든 절차에서 법률전문가와 기술전문가가 하나의 법원조직에서 동격의 판사로서 판단을 내린다. 기술판사제도는 특허법원의 설립시에 독일이나 유럽에서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유럽특허청에서 채택하고 있다.

특허법원의 기술판사의 필요한 자격요건은 자연과학분야나 기술분야의 대학을 졸업하여야 하고 5년 이상의 실무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이 요건은 독일 특허청의 심사관에게 요구되는 요건과 동일하며 실제로 특허법원의 기술판사는 경험있고 자격있는 독일 특허청의 심사관 중에서 선발된다.

개별소송절차에서 관여하는 기술판사의 수는 차이가 있지만 항상 2명 또는 3명의 기술판사가 각각의 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각 의 기술판사가 차이가 있으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독일 특허청의 부의 인적구성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특허법원에도 답습되었기 때문이다.

특허법원이 1961년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 재판장을 포함하여 42명의 법률전문판사가 임명되었었으며 현재 특허법원에는 약 70명의 법률전문판사가 있다. 그 이유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상표부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기술판사의 수도 변화가 있었다. 특허법원은 1961년에 기술항고부의 재판장을 포함하여 89명의 기술판사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75년에 115명의 기술판사로 최고에 이르렀다. 그 후 특허법원에는 약 80여명의 기술판사를 포함하여 총 150여명의 판사가 특허법원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125명의 판사, 즉 66명의 법률판사와 59명의 기술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기술판사가 없었다면 기술관련절차를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오늘날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법학교육 내지는 법조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변리사 공동 대리제도

특허소송에 있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변리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변리사 협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것이 변리사 공동대리제도이다.

현재의 법 해석에 의하면 특허권침해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사만이 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특허출원·심판에 다투는 민사소송에서는 변리사가 특허권자를 대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는 통상 특허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의 관련 기술 및 발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임료는 변호사가 챙기게 되고 실제로 업무를 하는 변리사는 수임료 중 일부만 받게 되어 변리사가 충실하게 대리를 할 의욕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특허권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변리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일찌감치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변리사도 변호사와 같이 특허권자를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소위 ‘부기변리사’라고 하는데, 변리사 중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와 같이 특허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영국은 조금 더 진보적이다. 특허사건에 있어서 통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변리사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호사의 이익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인 것이다.

영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발명가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런 견지에서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즉, 지식재산 즉 특허권에 대한 국내외 분쟁이 가속화되고 지식재산을 통한 불합리한 이득을 노리는 특허괴물의 출현과 소송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성 진작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변리사 공동 대응이라는 제도의 개선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제도권 내에서의 깊이 있는 숙고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식재산은 창출·활용·보호의 사이클로 이루어진다. 지식재산에 대한 창출은 우리나라가 세계 3~4위의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과 보호의 측면에서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특허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 부족하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5) 정책적 시사점

그 동안 위헌의 논란이 되어왔던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그 사실심 심급 구조가 개선되어 1998년 3월부터 고등법원격인 특허법원이 우리나라에도 설립되었고 특허법원 관할집중도 제도화 되었다.

이는 독일의 연방특허법원이 그 모델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특허법원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 수용하고, 부정적인 면을 시정하는 방향에서 순차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일연방특허법원에서는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내용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질이기 때문에 기술전문가의 재판에의 참여는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심리관제도를 두어 판사를 보조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분쟁의 보다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기술판사제도의 채택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분쟁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에 의한 판결만이 당사자의 판결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켜줄 수 있다. 아울러 기술판사와 일반판사의 조화로운 운용의 성과가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소송은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독일연방특허법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처럼 설치되는 특허법원의 제기능 유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은 기술의 진보 속도에 비추어 어느 다른 분쟁보다 신속·공정한 재판이 특히 요청된다. 오늘날 기술의 변화 모습은 컴퓨터·통신기기·유전공학·신소재개발 등 다방면에 걸쳐 첨단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내용을 다루는 산업재산소송에서 기술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기술판사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면, 변리사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도입하는 방안의 모색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전문성이 담보된 인력의 참여폭을 소극적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소송의 특질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일 것이다.

요컨대 특허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판사제도의 도입 또는 변리

사 공동대리 제도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법적인 측면, 제도적 측면, 운영의 효율성 측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적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특허법원 해외 사례분석 - 미국

1) 타일러[Tyler]

	<p>주소 : 212 N Bonner Ave, Tyler, TX 75702 웹사이트 : cityoftyler.org 연락처 : 903-531-1100</p> 
<p>1938년에 건축되어 2007년에 미국정부에서 지정한 역사적 건물로 지정</p>	
<p>타일러 시는 동부 텍사스의 의료, 유통 사업중심지이다. 타일러 도시는 미국 대통령 존 타일러 이름에서 만들어 졌으며 농업이 성행하여 동부 텍사스의 상업중심지로 자리잡았다. 1800년 후반에 기차길이 건설되면서 은행, 상업, 목화산업이 더 성장하였으며, 인구 1만이 넘는 도시로 되어 1900년 초반에는 타일러가 시로 인정이 되었다. 또한 비옥한 땅으로 과일과 장미 산업이 육성되어 미국에 유명한 텍사스 장미 페스티벌을 지금도 주최하고 있다. 동부텍사스의 제일 중요한 정유사업이 1930년대에 시작되어 경제가 부흥을 했다. 정유사업으로 1940년테 3만이 넘는 인구가 되었고, 현재는 인구 10만이 넘는 큰도시로 성장하였다.</p> <p>타일러시(텍사스주 동부법원) 특허관련 소송 일원화에 힘입어 2000년 20건에서 2013년 1,500여건으로 대폭증가함으로써 소송에 관여하는 외지인이 많아 몰려와 숙박시설과 요식업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텍사스주 동부법원의 가장 큰 장점은 통한 3-4년이 소요되는 특허소송을 1년 내에 끝내는 신속성이 특징이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소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p> <p>또한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법원이 다양한 외국어 통역을 제공하고 판사가 직접 복잡한 쟁점을 정리해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미 연방 차원에서 임명된 판사가 별다른 인사 이동 없이 계속 재판을 맡기 때문에 전문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p>	

2) 월밍턴[Wilmington]



미국 델라웨어주(州) 북부에 있는 도시.
 위치 미국 델라웨어주 북부
 인구(명) 70,851(2010년)

월밍턴은 1802년 프랑스에서 이민 온 엘뢰테르 이레네 뒤퐁 드 느무르가 화약공장을 세우면서 화학 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뒤퐁사(社) 및 관련 연구소의 본거지가 되었다. 1837년 필라델피아-월밍턴-볼티모어 철도가 완공되면서 산업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어 화학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가죽제품·직물·강철·섬유·관(管)·가공식품 등의 제조업도 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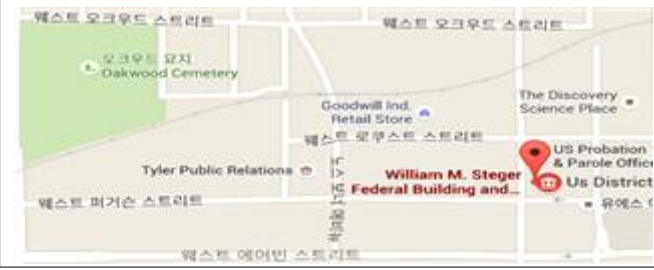
월밍턴 시는 회사 친화적 법률운영(하지만 가장 엄격하기도 함)의 인헤 공평하고 효율적 판결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많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미국내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많은 유명한 은행들이 본사를 두고 있다. 또한 배심원들의 결정이 아닌 판사의 결정으로 대신한다. 형평법 법원에서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빠른 처리로 유명하기도 하다. 파산선고를 하는 법원이 월밍턴에 있고, 94개 법원중에 제일 바쁜 법원이기도 하다.

특허심판원 신진균 원장 소개

(월밍턴시 소재 관련기관)

6. 델라웨어 월밍턴 시청(Wilmington Mayor's office)
7. 델라웨어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
8. 델라웨어 테크놀러지 파크 (The Delaware Technology Park : DTP)
9. 델라웨어 상공회의소(Delaware State Chamber of Commerce)
10. Duane Morris LLP(법률사무소)

3) 동부텍사스 미국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p>주소 : 211 W Ferguson St #106, Tyler, TX 75702 웹사이트 : txed.uscourts.gov 연락처 : (903) 590-1000</p> 
<p>동부 텍사스의 미국 지방법원은 텍사스 주의 타일러 시에 위치하고 있다. 1857년에 설립되어 8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다. 특히, 소송분쟁에 관한 Marshall, Tyler, Texarkana 분과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 분쟁 케이스가 지역의 규칙과 빠른 재판진행으로 인하여 이 작은 도시에 특허 심판 청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큰 도시 특히 휴스턴과 달라스와도 근접해 있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심원들의 관심이 커 특허 특허소송 분쟁에 대한 케이스들을 Marshall, Tyler, Texarkana 같은 도시들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2003년에는 14개의 특허소송이 진행되었고, 2004년에는 4 배가 넘는 59건이 진행되었다. 2006년에는 극적으로 성장하여 236개의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이 세 도시의 법원에서는 특허소송 분쟁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호의적인 사법권 행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p>	

4) Garteiser Honea - Trial Attorneys(특허법률사무소)

	<p>주소 : 119 W Ferguson St,Tyler, TX 75702 웹사이트 : ghiplaw.com 연락처 : (903) 705-7420</p> 
---	---



Garteiser Honea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이해 관계가 있는 재판이나 항소를 다루고 있다. 특히 앞서가는 변호인들로서, 지적 재산권과 분쟁을 다루고 있다. 동쪽 텍사스와 북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 법원과 함께 일반적인 경험과 친숙함으로 인해 이들 두개 주의 변호 상담을 제공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특히나 이곳 로펌의 변호사들은 항소재판이나 연방정부 재판을 위한 유명한 재판직으로부터 혹은 손에 꼽히는 법대학의 출신들이다. 우리는 개인, 포춘의 대표적 500대 회사들을 원고와 혹은 피고인 입장에서 대변하며, 모든 법정 소송을 여러 수준에서 주법원, 연방 법원, 그리고 미국 최고의 법원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결과를 이어왔다. 이 회사는 재판으로 가기 위해 모든 경우를 준비하며, 또한 고객들과 그들의 법적 사업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들을 지식적으로 지도를 제공해 주고 있다.

5) 미국특허청 텍사스 사무소 (USPTO Texas Regional Office)

	<p>주소 : 207 South Houston Street Dallas, Texas 75202 웹사이트 : www.uspto.gov 연락처 : (469) 295-9000</p> 
	<p>미국에는 5개의 특허청 사무소가 있다. Alexandria(Virginia), Dallas(Texas), Denver(Colorado), Detroit(Michigan), Silicon Valley(California) 에 있으며 Virginia에 본부를 두고 있다. 코넬 대학에서 이들 다섯개의 기관에 대해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p>

6) Texas A&M University School of Law(CLIP: Center for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p>주소 : 1515 Commerce St, Fort Worth, TX 76102 웹사이트 : law.tamu.edu 연락처 : (817) 212-4000</p> 
<p>미국에서 4번째로 큰 대학이며, 텍사스에서는 제일 큰 대학이다. Texas Wesleyan University School of Law을 사들이고 이름을 Texas A&M University School of Law로 지어졌다. 어느 부분에서나 지적 자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 CLIP of Texas A&M University of Law 에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등록 등의 복잡한 법적 이슈들을 직접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수업들을 하나로 통합하였다.</p>	

7) 델라웨어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

	<p>주소 : 844 N King St #18, Wilmington, DE 19801 웹사이트 : ded.uscourts.gov 연락처 : (302) 573-6170</p> 
<p>많은 수의 특허관련, 복잡한 상업 분쟁을 다루는 법원으로 유명하며 또한 미국내 파산을 다루는 법원으로도 유명하다.</p>	

8) Duane Morris LLP(법률사무소)

	<p>주소 : 222 Delaware Ave # 1600, Wilmington, DE 19801</p> <p>웹사이트 : duanemorris.com</p> <p>연락처 : (302) 657-4900</p> 
<p>1904년 설립 이래로, 700명이 넘는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하였으며, 미국, 영국, 아시아를 커버하고 있다.</p> <p>미국과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국제적으로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해 점점 더 넓혀나갈 예정이며, 기준에 맞고 그 지역의 요건에 맞는 변호인들을 늘려갈 예정이다. 현재 멕시코와 스리랑카와 동맹을 맺고 있는 로펌들이 있고, 그 회사들과의 좋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좋은 정보 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 어떤 고객이 오더라도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2015년에는 미국내 최고의 로펌회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1세기는 지적재산과 바이오테크놀로지 개발의 등록을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테크와 제약 등록 등에 관련한 세계 top 10 안에 있고, 미국내 파산에 관련하여 제일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p>	

제5장 특허허브도시 개념 및 정책적 시사점

1. 특허허브도시 개념 및 해외 사례

(1) 특허허브도시 개념 및 가치

동북아 특허허브도시로 육성이라는 대전의 전략적 지향점을 고려해 볼 때 두가지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소위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개념과 특허허브라는 개념이다.

동북아라는 개념은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으나, 3국을 포괄하는 확장적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허브라는 개념 역시 사전적 의미인 중심축이라는 제한된 의미가 아닌 전략적 확장성을 중심으로 재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중심축이라는 개념은 위치에 한정된 개념이고, 기능과 가치의 측면에서 본 개념은 흐름과 관계, 연결이 이루어지는 교차의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허브를 정보통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해 질 것이다. 허브는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하여 정보의 흐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허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허브가 각각의 컴퓨터를 대표한다거나, 정보를 독점하거나 무조건 통제 하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 간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허브의 의미이며 가치라는 점을 특허허브도시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허브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질 때 다른 허브보다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는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입의 양이 많아야 하며, 자유롭게 정보가 흐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유출에 있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핵심요소일 것이다. 허브를 통하지 않고도 정보의 유통과 흐름은 가능한 상태에서 허브를 통했을 때 보다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허브의 개념을 특허허브도시 측면에서 정리하면 전략적 지향성을 보다 명확히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또는 지식재산은 기업, 개인, 연구소, 정부, 금융기관, 대학, 법원, 관련기관 등의 사이에서 매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주체들간에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한 산업과의 연관관계와 복잡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가 하나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국가간에 있어서는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무한 경쟁하는 구조를 동반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특허허브도시 또는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동북아(아시아) 특허허브도시의 구체적 기능은 지식재산에 대한 소송, 서비스에 해당하는 역할과, 정보, 자금, 인력, 컨설팅을 매개하고 조정하며 선도하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특허허브도시의 중요성이 경제적 관점에서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변국들도 다양한 형태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동북아에서 특허허브국가 또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없는 상태이다. 대전이 특허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대전의 지정학적 위치,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창출되는 수많은 특허, 특허청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등 국가적 인프라의 지역내 입지, 국회차원에서 특허허브도시 육성에 대한 입법 활동 등의 환경을 잘 살려나가고, 대전의 행정적 지원체계, 정책적 추진의지, 시민의 공감 등을 조화있게 잘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대전이 동북아의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브랜드 형성 과정을 통해 특허허브도시로서 충분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특허허브도시 사례 분석 -민헨을 중심으로

1) 특허허브도시로서의 필요조건 및 충분조건

대전은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고, 특허청이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으며, 특허법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입지해 있다. 그리고 특허정보원 본원이 이전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기능과 특허행정 기능, 특허사법 기능은 물론 특허산업, 지식재산교육 및 특허정보의 중심지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전이 특허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환경적 필요조건은 충족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략적 측면, 정책적 측면, 행정적 측면, 시민의 공감 측면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이 잘 준비되고 갖추어질 때 비로소 대전이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충분조건을 구비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특허의 생산, 활용,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이 입지해 있고, 특허행정은 물론 지식재산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까지 입지해 있는 환경적 요인을 십분 활용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내 지식서비스 산업은 물론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조직, 행정, 정책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다.

2) 특허 허브도시 뮌헨의 시사점

독일의 뮌헨은 독일 특허청은 물론 유럽의 특허청까지도 입지해 있는 대표적인 특허타운이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막스플랑크 특허법연구소까지도 설치되어 있고 독일변리사회 본부도 위치해 있다. 대덕연구단지과 특허 관련 기관들이 입지해 있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대전은 뮌헨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일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킹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네트워킹을 견인하고 조율하며 확산시키는 핵심이 바로 허브의 기능이며 허브의 중심 가치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하는 대전시의 과제이기도 하다. 대전은 과학기술과 특허 관련 중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지만 상호간의 정보교류 내지는 협력체제가 미미하고 더욱이 네트워킹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대전에 입지한 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예하 기관으로서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조정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킹의 부재에서 오는 협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지의 환경적 강점을 바탕으로 대전시가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가치를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산업 및 정책과의 협치 및 조율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대전의 산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전의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과학기술, 특허 관련 단체기관장협의회부터 출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역내의 산학연 및 언론계가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잘 발전시키면 우리가 소위 BESETO 형태의 동북아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학 마인드와 법적 마인드 즉 개념 논리 체계의 결합, 나아가 비즈니스 마인드의 융합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최대 발휘될 수 있으며 보

편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뮌헨이 유럽의 특허허브로 발전하게 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배경과 그들의 노력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뮌헨에 단지 특허관련, 지식재산관련 기관이 입지했다는 것만으로 유럽의 특허허브도시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뮌헨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 즉 교통의 접근성과, 배후에 위치한 첨단 기업들, 그리고 수많은 대학과 더불어 풍부한 예술성과 관광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뮌헨은 지멘스나 BMW, MAN(자동차엔진 전문기업)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연구소가 그 주변에 있음은 물론, 뮌헨대학과 뮌헨공대 그리고 185개에 이르는 직업학교가 과학기술 및 특허전문인력을 공급해 주고 있다. 또한 45개의 박물관, 142개의 공공도서관, 42개의 극장, 89개의 영화관 등이 뮌헨의 문화적 위상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배경을 바탕으로 독일변리사협회본부 역시 자연스럽게 뮌헨에 입지해 있다. 전문인력이나 기관을 유입시키는데 있어서 도시의 문화의 질, 생활환경, 교육 환경 등이 그 어떤 요소보다 우선하는 시대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특히 세계적인 과학박물관, 박람회장, Henle 음악출판사, 음반제작사, 세련된 미술관, ARD와 같은 세계적 콩쿠르, 맥주축제, 오페라 하우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같은 예술·문화적 기반이 과학문화도시 뮌헨의 예술적 상상력과 지적 창조력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뮌헨사람이 갖는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이 내재된 동력이란 것을 대전시의 관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하다.

바이에른의 州都 뮌헨은 인구 면에서나 지리적 위치 면에 있어서 그리고 과학문화도시로서 대전과 닮은 점이 많다. 인구는 대전과 비슷한 약 13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어서 동으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와 가깝고 남으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서쪽으로는 프랑스와 가까워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의 특징상 육로를 이용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발달되어 있음은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와 다르지만, 동북아 또는 아시아라는 광역적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공항은 아시아 최대의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환경과 국내 교통망의 중심에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배후에 청주 공항과 행정복합도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지정학적 환경, 교통환경 등, 매력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다만 이런 환경적 강점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치를 극대화하여 특허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동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전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고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단기적인 정책의 수립이 아닌, 환경적 강점을 극대화시킬 코어(핵심)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코어(핵심)전략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산업적 연대를 강화시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행정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뮌헨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핵심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사항중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막스플랑크 지적재산권 연구소가 있다는 점이다. 뮌헨이 막스플랑크 지적재산권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유럽특허청(EPO)을 유치하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은 물론 세계 최고의 특허타운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3) 해외 추진 동향

한·중·일이 특허 출원 주요 국가로 부상하면서 세계 지식재산(IP) 판도를 바꾸고 있다. 최근 들어 IP 창출·보호·활용 분야에서 앞 다퉈 아시아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IP 허브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아시아 IP 허브를 향한 각축장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측면에서 아시아 IP 허브국가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최근 ‘아시아 IP 허브 종합계획(IP HUB Master Plan)’을 발표했다. 전략 목표로는 ①기업이 IP를 국제적으로 관리·거래할 수 있는 거점 형성, ②기업이 IP를 등록·보호·활용할 수 있는 IP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③IP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IP 분쟁 해결 체계 구축 등이다.

싱가포르가 제조 산업기반이 취약한 만큼 연구개발(R&D)을 통한 IP 활용보다는 거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강점은 “싱가포르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고 친기업적 풍토가 있는 만큼 글로벌 IP 기업·로펌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IP가 유통될 수 있는 거점 요소를 모두 갖췄다”고 할 것이다.

독일 한 법무법인과 거래를 하던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최근 그 해당 독일의 법무법인이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세웠다는 것을 알았다.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아시아 지역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전 변리사는 “언어·교육환경·세제혜택 등 인프라 때문에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기업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려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률시장 문제 등 IP 관련 해외 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2) 중국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특허(43만5,608건), 실용신안(58만1,303건), 디자인(50만7,538건), 상표(123만3,827건) 등 전 IP 분야에서 출원 1위를 달성하였다. 중국은 여세를 몰아 질적 창출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약이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IP 거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중국 국무원이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를 발표한 이후, 모든 지역(성)별로 IP 거래소가 설치되었다.

베이징 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과 협력하여 IP 담보대출 활성화 수단으로 IP 거래소가 운영 중에 있다. 최근에는 거래소 중심으로 해외 IP 매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 등 선진국가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IP를 기술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대량 매입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 기술이전 최대 수요 시장으로 떠올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외국 기업특허를 매입하는 경우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별로 혜택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기술 도입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3) 일본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적재산정책비전안’을 발표하였다. IP 창출·보호·활용 단계를 넘어 해외 진출 일본 기업에 대한 IP 경영 지원 등 글로벌 I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비전안을 통해 아시아 신흥국의 급격한 성장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성장기조 경제에서 기업 IP 경영을 촉진하여 장기 불황을 탈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

2. 특허허브 도시의 선결 조건

- 대전시 특허허브 도시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구축

싱가포르의 ‘지식재산조정위원회(IP Steering Committee)’, 중국의 ‘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 등은 모두 국가차원에서 아시아 IP 허브 전략을 구상하는 컨트롤타워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아시아 IP 허브를 지향하는 국가는 대부분 컨트롤타워를 국가 수장이 직접 챙겨 IP를 주요 정책으로 관리하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역시 최소한 국무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보다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일부에서는 국가 IP전략을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선진 IP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IP 허브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부족한 상황이다.

아시아 IP 허브 구축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IP 거래 활성화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IP 거래를 기술 유출로 인식하고 IP 금융 등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기 꺼려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대학·연구소 특허가 잠자고 있고 IP 거래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기술 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아시아 IP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나 IP 매매로 IP가 해외로 거래되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허허브도시 측면에서 대전에는 대덕연구단지, 특허청,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인 카이스트, 중부권의 우수 국립대학인 충남대, 수많은 벤처기업 등 탄탄한 인프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계하여 가치를 증폭시킬 지식재산 또는 지적재산 연구소 또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할 핵심기관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코어(핵심)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와 후속적인 행정적 노력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특허허브도시가 갖추어야 할 선결조건은 다음 그림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특허 관련 교육, R&D(특허창출), 행정·법률, 전시·컨벤션·체험, 법률지원, 지식재산사업화 등 6가지 기능군 내지는 구성요소가 충분히 갖추어지고 원활하게 작동기제에 의해 일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6가지 구성요소에 대하여 각각의 지역내의 활용자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대전이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특허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특허교육, 특허R&D(창출), 특허행정·법률, 특허관련 전시·컨벤션 체험, 법률지원, 지식재산 산업화 등 전 영역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하는 세부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우선 무엇보다도 정부가 검토중인 국제재판부의 기능을 반드시 특허법원 내에 두도록 하고 현재 구상중에 있는 발명테마파크의 완벽한 조성 그리고 한국특허센터의 설립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상당 수준의 허브도시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5-1> ‘특허허브도시 대전’ 개념도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할 핵심기관의 조직과 기관의 위상 정립, 전문성

확보, 업무의 포괄성이 함께 갖추어 질 때 비로소 특허허브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체계성 및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 특허타운과 같은 경쟁력이 담보되고 에너지가 응축된 지식재산의 메카로의 발전을 향한 실효적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학과 특허관련 기관장 협의회 또는 민간차원에서의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언론과 정부가 협력하여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BESETO와 같은 동북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 경우 SE는 국내적으로 세부적으로 서울-대전을 함께 공간적으로 연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허 관련 인프라가 사실상 대전이 서울 이상으로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의 관련 교육·문화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인식 확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또는 특허관련 산업이 독립적으로 발전되는게 아니라 도시경쟁력이 수반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가지 예로 MICE 산업과의 상호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성과 위상 그리고 업무의 포괄성을 갖춘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핵심기관의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이 기관이 핵심이 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대전이 명실상부하게 특허타운 더 나아가서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작게는 현재 제한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식재산센터의 기능, 위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6장 ‘특허허브도시 대전’ 분야별 대응전략

1. ‘특허허브도시 대전’ 거버넌스체계 구축

-1단계(사무국), 2단계((가칭)특허허브도시진흥재단)

특허 또는 지식재산은 정부, 연구소, 기업, 금융기관, 대학, 법원, 관련기관과 민간부문 등의 사이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들 다양한 주체들간에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한 산업과의 연관관계와 복잡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특허허브도시의 중요성이 경제적 관점에서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국내는 물론 동북아에서 특허허브국가 또는 특허허브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없는 상태로 이 시점에서 대전이 국내와 동북아를 지향하며 특허허브도시로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의 지정학적 위치,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창출되는 수많은 특허, 특허청,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국가적 인프라의 지역내 입지, 국가 및 지방행정의 각종 지원체계, 정책적 추진의진, 시민의 공감 등을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대전이 동북아의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이미지, 브랜드 형성과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국제적 특허허브도시로서 충분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특허허브도시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큰 틀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걸맞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가칭)특허허브도시진흥재단 설립을 제안코자 한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을 토대로 (가칭)특허허브도시진흥재단을 설립하며 재단은 특허청, 특허법원 및 대전광역시(대전지식재산센터) 등 공공부문의 추진주체와 대덕연구단지연구기관, KAIST·충남대특허법무대학원, 한국특허정보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관련기관 그리고 지역내외의 특허관련 민간사업체와의 연계지원체계를 구축,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할 수 있겠다.

정부와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각각의 기관, 단체가 각자의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상호 네트워크로 협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성과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특어어브도시' 대전 개념도 >

거버넌스 체계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종합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인텔리전스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외의 특허관련 복잡다기한 환경을 분석하고 특허 관련 기관, 단체의 여러 다양한 정책결정과 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통합하여 파악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사무국의 기능을 전문성을 갖춘 기획역량을 전제로 부여하고 혁신 조사, 정보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가칭)특허어브도시 진흥재단 설립이전에 1단계로 독립적인 사무국 설립을 통한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특허 관련 여러 기관들의 중첩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중립적인 지원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1단계 사무국 설립은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여 시의 조례 제정을 통해 사무국 설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허어브도시의 거버넌스 체계의 완성도는 국가적 틀에서 재단 설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이전단계로 대전광역시가 주도해서 사무국을 설립하고 각 관련 주체들의 현재의 기능과 업무를 특허어브도시 지향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각종 자료, 정보를 집중-분산하는 역할과 공동협력사업 등을 창출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무국 설치 운영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특허 관련 단체기관장협의회부터 출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역내 산학연 및 언론계가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임

특허허브도시의 거버넌스 체계가 본연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형태를 띠든지 무관하게 반드시 개방적인 정책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현재의 각 주체들이 수행하는 사업과 업무가 특허허브도시 지향적 목표성을 갖고 이에 합치되는 사업과 업무의 조정, 전개가 이루어져야 본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특허전문화지구 지정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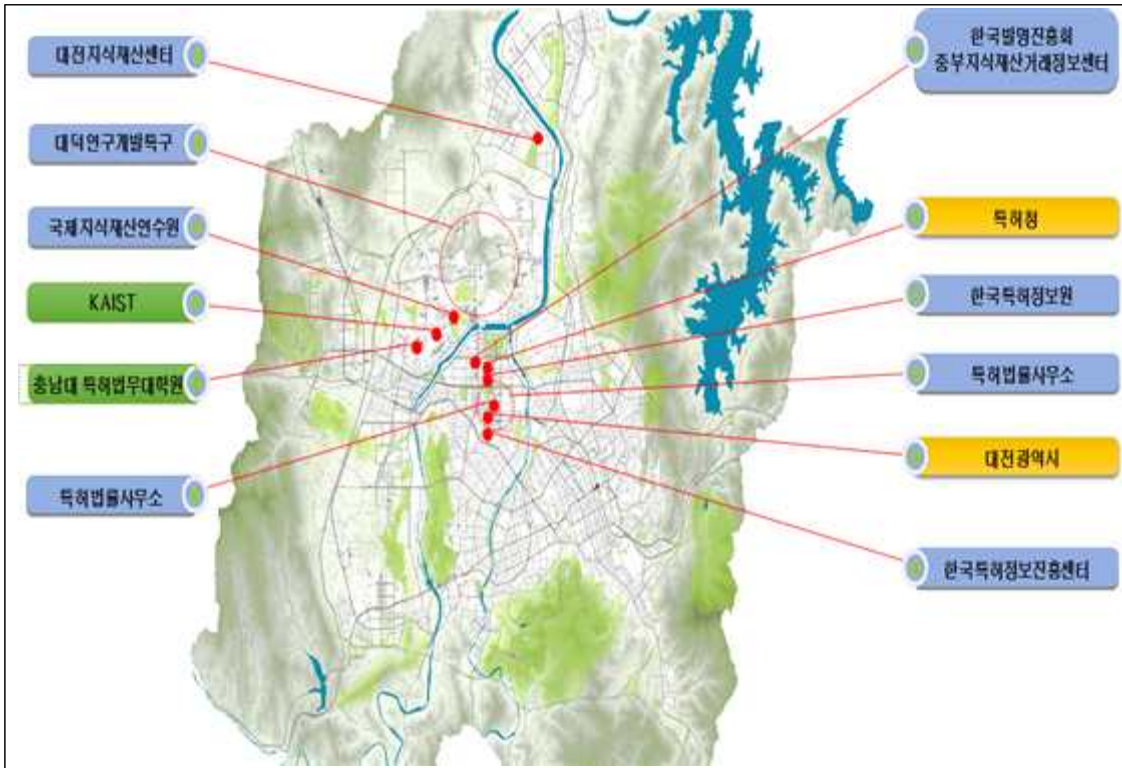
대전은 대덕연구단지과 한국과학기술원, 특허청 그리고 국제특허연수원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및 특허관련 기관의 모범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도시로서 이와 함께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까지 자리함으로써 특허사법, 행정, 기술, 산업, 교육 등이 한 곳에 모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 지역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특허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독일 뮌헨시와 같은 과학기술특허타운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모두 특허법원에 집중시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적재산권연구소를 대전지역에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지역내에 소재한 특허 관련 각종 기관의 공간적 입지 여건 등을 파악하여 공간적으로 특허전문화지구 내지는 종래의 클러스터 개념의 특허타운 조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역내에 분산해서 분포해 있는 다양한 특허 관련 혁신주체들의 입지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중심적인 기능공간으로서 특허행정, IP창출, 교육·홍보, 사업화지구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전문화지구(특허특화지구)(존 : Zone)를 설정하고, 차후 순차적으로 이러한 전문화 지구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입지를 특화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한다.

공간적으로 한 개의 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지역내 기관 분포가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 특허타운 조성은 불가하다고 하겠다.

참고로 현재 대전지역 내에 소재한 국가적 내지는 지역적 특허관련 기관, 자원 분포 현황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특히 특허관련 공공 및 민간사업체들로 구성되는 특허사업화지구의 경우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국내 유수의 특허소송 및 특허출원 관련 사업체의 지역내 입지 촉진을 위해 관할 지역내에 입지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행·재정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지역 소재 특허 관련 기관 입지 현황]

구체적으로 대전이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현재의 특허 관련 기관의 집중이라고 하는 물적환경에 기초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특허 관련 민간사업체의 대전 이전 내지는 신생 사업체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전문화 영역의 인재들이 함께 공존하며 상생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 관련 사업자 내지는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대전시에서 관심있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특허청이 지금까지 주로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관행적인 특허 관련 사업(행사)의 지역 전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특허행정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여러 특허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이 전개될 수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특허청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우수상표권 공모전, 특허청 지식콘서트, 특허청 주관 디자인세미나 등 많은 행사들이 개최되는데 주로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전체 행사를 대전지역으로 유도하기가 곤란하면 최소한 격년 단위로라도 대전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6-1> 대전 특허전문화지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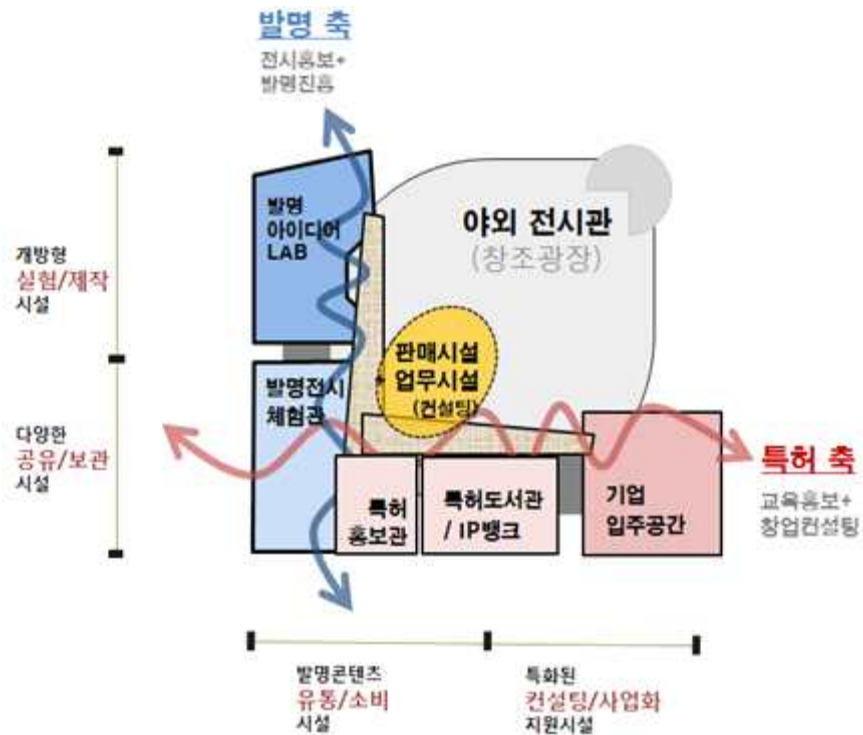
한편 대전 소재 특허법원에 향후 국제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 경우 글로벌 특허소송의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포럼 쇼핑(global forum shopping, 유리한 법정 고르기)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을 재판지로 선택할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특허소송의 대전지역 역할 분담에 대비한 글로벌 특허 전문인력 확보 등 역량 확충이 필수적이다. 최근 특허법원이 외국어 심리매뉴얼의 공개를 통해 특허법원 재판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아시아 특허중심법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역시 특허행정전문화지구와 특허사업화지구의 연결점에서 대전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후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 국제재판부를 국내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전지역 입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지식재산 거점지구’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특허센터를 설립하고 이곳에 특허법률사무소, IP 서비스업체 등 공공·민간 IP 유관기관이 입주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부측이 예산 등의 이유로 센터 설립에 시설적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나 대덕특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이 협력하여 최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전지역에 최단기간에 특허센

터의 설립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최근 대전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발명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업을 계기로 대시민 교육, 홍보 확산 및 민간사업체의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 영역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검토중에 있는 발명테마파크의 시설 구상안에 따르면 발명콘텐츠 유통-소비시설로 발명과 관련한 창작 공간, 전시체험관을 설치하고, 시민 아이디어 창업지원 및 발명진흥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에 특화된 컨설팅-사업화 지원시설로서 특허 홍보관과 도서관을 건립하고 특허(법)관련 홍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는 등 특허 및 발명과 관련하여 지식/정보의 교류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활용하여 창업 및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특허교육홍보지구(Zone)의 범주에서 협력적인 후속사업이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그림 6-2> 발명테마파크 시설 구상안



출처 : 대전발전연구원, 발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2016.9.

3. 특허허브도시를 목표로 한 교육 및 홍보 확산

특허허브도시를 지향하면서 앞서 언급한 특허관련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확충하고 각 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협력적 연대를 통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목표와 방향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대전이 지금까지의 도시 이미지로 구축되어 왔던 과학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한가지 이미지 축으로서 특허허브도시로서의 대전 이미지를 지향하는 시민공감과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1) 지식재산 교육을 바탕으로 한 특허허브도시화 추진

대전이 특허허브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민과의 정책적 공감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덕연구단지가 입지해 있다는 상징성이 대외적으로는 대전이 과학기술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지만 대전시민의 전적인 동의와 그를 통한 경제적 유발효과와 산업적 측면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금까지도 과제로 남아있고 여전히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지식재산이란 관점에서 대덕연구단지, 특허청, 특허법원, 한국특허정보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은 분명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핵심 자원이며 인프라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재 측면에서 과학 못지않게 특허 내지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자원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한 중심축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원인 특허(지식재산)를 대전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대전의 도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역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활용도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자원을 대전만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대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대전이 지식재산도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향후 대전을 상징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육성할 때 비로소 시민이 공감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앞서의 여러 특허관련 혁신주체들의 일치된 액션과 어울어져 명실공히 바람직한 특허허브도시가 될 것이다.

우선 교육에 있어서 현재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대전의 특허허브도시로서 지향하는 도시상(도시이미지)에 관한 구체적인 형상화 교육을 진

행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후 성인이 되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였을 때 대전은 자연스럽게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인식이 보편화되고 도시의 브랜드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대전시에서 집중적으로 가치있게 논의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이 그와 같은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협력하에 이러한 정책적 대안과 행정적 지원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개념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 목적

-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으로 자기성찰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미래지향적 역량 (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 형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다.

▶자유학기제 비전



(2) 특허허브도시의 대내·외 전략적 홍보방안 및 역량 강화

대전이 특허허브도시 또는 지식재산 중심도시로의 이미지 형성 및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우선 대전시민과의 정책과 정체성에 대한 공감의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대전시의 정책적 지향점인 대전시의 특허허브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현실은 정책 수행의 동력 및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전시가 시민의 공감과 동의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교육을 통한 인식의 확산이란 판단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특허, 지식재산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은 향후 지식재산도시,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이미지 형성과 정체성을 확보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대전에 위치해 있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특허법원, 과학관 및 각종 연구소, 대학의 인프라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은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직업탐색 및 창의적 교육의 목표와 가치와 의미에서도 정책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부분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특허법원 및 특허청등은 체험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과학관은 대전이 특허허브도시, 지식재산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일정에 추가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대전의 특허허브도시의 국제적인 이미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전문가 그룹을 통한 홍보와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한 대전의 지식재산도시, 특허허브도시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 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센(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를 참고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SEN(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은 전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2013년 현재 70여개국 10만여 회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1999년 이래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해오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지식 공유가 주목적이며, 연구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지식재산관련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로 발전을 모색한다면 대전의 정책적 지향점을 달성하고 대전의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해외 사무실이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입지한 상태에서 특허출원 중심국가로의 위상을 바탕으로 대전에 WIPO 해외 사무실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정부,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상징성과 함께 180여개 회원국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포럼 및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측면과 MICE 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특허-MICE의 연계를 통한 특허허브도시 브랜드 구축

(1) 대전의 MICE 산업 여건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제 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관광산업이 야말로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내 관광산업의 촉진을 유도했다. 덕분에 국내 여행업계는 관광주관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의 수혜를 입게 됐다.

지금은 생산공장이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던 시대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관광산업이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각광받는 시대이다. 국내 관광산업의 성장은 곧 장애인관광, MICE, 의료관광, 생태관광 등 특수목적 관광산업으로의 변화 추세에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와 MICE 산업은 각 지자체의 핵심 사업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 및 지자체의 노력으로 그 성장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현재 국내 각 지자체들은 시작단계인 특수목적 관광산업에서 명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역 이미지를 관광 사업에 맞춰 브랜딩하고 있다.

대전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이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곧 대전이 MICE 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을 의미하며 대전 역시 이와 함께 대전을 MICE 중심지로 키우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전은 최대 6,401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전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대전컨벤션센터는 2008년 개관 이래 2011년까지 4년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43%에 달한다. 4년간 누적행사 개최건수는 1,768건(국제행사 159건 포함), 4년간 대전지역 누적 경제파급효과는 4,833억 원이다.

대전은 행사 유치 이외에도 다양한 컨벤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전은 MICE 포털 구축사업을 통해 대전 MICE의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대전은 MICE포털 ‘Visit Daejeon’을 통해 MICE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한 네트워크 정보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의 MICE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국제기준의 세계도시 마케팅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국내외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컨벤션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하여 대전·충청 MICE Alliance 운영을 활성화하여, 현재 총 47개사의 지역 MICE산업 상생 발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MICE Youth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운영, 홍보요원으로 활용·육성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과학·컨벤션 관련 글로벌 협의체 운영으로 특화분야에 대한 국제행사 정보교류 및 협력 사업 역시 추진하고 있다.

(2) 포럼의 경제적 가치 및 대전의 MICE 산업 연계

2015년 2월 25일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주간조선에 특허허브추진법의 당위성에 대한 인터뷰에서 “특허허브추진법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장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전문인력과 제도적 뒷받침만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다.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까지 합치면, 연간 500조원에 이른다는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 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신속한 재판과 특허권자 보호 강화, 판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을 찾아 소송을 진행한다.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 포럼쇼핑의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허허브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선 주목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포럼과 마이스 산업의 연계 및 육성이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 포럼으로 자리잡은 세계지식포럼(The World Knowledge Forum)의 경우 2012년에 3일간의 강연 기간에 약 200명의 연사와 2,500여 명의 유료 수강생이 몰려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 바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현 하버드대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톤스쿨 교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민주당 정조회장 등 수많은 연사가 직접 청중들과 교감했고 16회째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지식포럼 외에도 수많은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2012년에는 거의 매월 각종 언론사나 경제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포럼이 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유명인을 만날 수 있다’는 이유 외에도 포럼이 이처럼
 줄을 잇는 데는 이유가 있다. 포럼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2012 글로벌 주요 포럼>

포럼명	주최	장소	시기
Consumer Electronics Show	CEA	미국 라스베이거스	1월 10~13일
Davos Forum	WEF	스위스 다보스	1월 25~29일
Mobile World Congress		스페인 바르셀로나	2월 27일~3월 1일
TED Conference		미국 롱비치	2월 27일~3월 2일
China Development Forum	China Development Research	중국 베이징	3월 말
Boao Forum	보아오포럼위원회	중국 하이난	4월 중순
Milken Institute Global Conference	Milken Institute	미국 LA	4월 29일~5월 2일
World Innovation Forum	HSM	미국 뉴욕	5월 8~9일
OECD Forum	OECD	프랑스 파리	5월 22~24일
동아시아 WEF	WEF	태국 방콕	5월 30일~6월 1일
Clinton Global Initiative		미국 뉴욕	9월 말
World Business Forum	HSM	미국 뉴욕	10월 2~3일
World Knowledge Forum	매일경제신문·MBN	한국 서울	10월 9~11일

46년의 역사가 있는 다보스포럼은 공식 명칭이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이다. 하지만 1971년 신설 당시 명칭은 ‘유럽경영자포럼(The European Management Forum)’이었다. 초기에는 전 세계 31개국에서 450여 명의 참여자가 50여 명의 연사에게서 강연을 듣는 규모였다.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조직 구성이 중점 토론 대상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포럼에 온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스키로 유명한 스위스 다보스의 설경과 1월 24일~2월 7일 열린 이 포럼 기간이 유럽의 휴가철이라는 두 가지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고,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하여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명분과 실리 사이의 복잡한 외교적 방정식 이외에 다보스포럼은 첫 해 현재의 원화가치로 3,000만원이 넘는 2만5,000 스위스 프랑의 기부금을 참석자들에게서 받았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참석했던 사람들은 "내년에도 이런 포럼을 다시 열어 달라"고 열광하며 기꺼이 지불했고 45년이 지난 현재까지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전의 정체성중 하나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외홍보 및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이다. 미국에서 1984년 출발한 이 포럼은 첫해에 소니에서 개발한 CD, 루카스필름에서 만든 3D 입체영화 등 신기술을 소개하였다. 연사와 콘텐츠의 라인업과 내용은 가히 최고라고 불릴 만했지만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2000년 TED는 크리스 앤더슨 현 큐레이터가 인수하면서 전환기를 맞았었다.

동영상으로 강의를 옮기기 시작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매체에 소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런 철학은 앤더슨의 발언 "아이디어는 공짜지만, 퍼뜨리는 데는 돈이 든다"는 말에서도 읽을 수 있다. 앤더슨 본인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바로 포럼 콘텐츠의 '미디어화'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포럼이 미디어 성격을 더해가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TED로 흡수되기 시작하였다. TED를 통해 전파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기업, NGO, 국가 등에서 채택되는 일이 벌어지고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지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려는 사람들은 TED를 알고 있고, TED 채널을 보면서 이 포럼에 한 구성원으로 활동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간다면 TED는 더 많은 시청자와 청중을 얻을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효과를 '네트워크 이펙트(the network effect)'라고 부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식재산(IP)의 창출-활용-보호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보편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표적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특허허브포털을 주도해 간다면 이 또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물론 특허허브로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유발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홍보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새롭게 대전지식재산포럼 창립을 통해 대전이 특허허브도시로의 기반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제고야말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대전에서 지식재산관련 세계적 포럼이 개최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와 극복해야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식재산의 경우 제도와 분쟁 출원 등 모든 분야가 미국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전에서 세계적인 포럼의 개최를 통하여 포럼의 성공적 정착과 특허허브도시로서의 대전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 전략과 지속적인 정책적 지향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닐 것이며 당연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인천공항이 아시아, 세계 허브공항으로서의 발돋움 과정에도 수많은 부정적 견해와 난관이 있었으나 현재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상황이다.

지식재산의 출원의 경우 세계 4대 출원국중 3개 국가가 이웃해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고, 미래시장에 관점을 두고 3국이 주도하는 포럼을 만들고 상호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베세토(beseto)를 주목해 보고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베세토(beseto)는 베이징(Beijing)의 BE, 서울(Seoul)의 SE, 도쿄(Tokyo)의 TO를 따서 붙여졌다. 베세토(BESETO)는 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경제권, 문화권 지역이다.

베세토 벨트, 베세토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베세토의 출발은 1994년에 있던 베세토 연극제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교류 활동이었으나 2000년에는 경제 분야로 확대됨과 동시에 베세토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현재는 경제, 문화를 총괄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다.

지식재산 관련 3국의 도시 연계가 특허법원이 관할 집중되어 있는 대전, 오사카, 베이징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식재산포럼」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순환해서 개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포럼의 초기 기획은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특허법원, 특허청, 변리사단체, 대학, 지식재산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포럼이 대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개최될 경우 경제적 유발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의 MICE 산업과의 연계의 필연성이다. 포럼과 MICE 산업과의 효율적, 전략적 연계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5. 지식재산 관련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

(1) 대전지식재산센터의 위상 제고

1) 비전 및 목표

<그림 6-3 지식재산센터 비전 및 목표>



2) 주요 업무

대전지식재산센터는 대전지역 중소 벤처기업 및 연구 개발자를 대상으로 ①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②지역특화사업, ③기술 권리화 및 특허정보지원, ④특허기술사업화, ⑤대학의 특허기술역량 강화지원, ⑥기술거래 기반강화, ⑦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설립 배경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19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운영한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00년에 동 열람소를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였고, 2004년 1월에 이를 개편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개('15년 현재)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센터를 통해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지자체 등 발명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목적

지역의 발명품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도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 도모 등 지역의 지재권 창출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8장(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원)
-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2) 지역별 기관 현황



3) 정책적 지향점

대전이 특허허브도시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현재 지식재산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위주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식재산서비스의 영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특허법원 관할집중이 단순한 특허소송 항소심을 관할 집중한 것이 아니라 1심의 경우에도 그동안 58개 법원에서 진행되던 1심을 5개의 고등법원으로 집중하고 2심의 경우 5개의 고법과 18개의 지법항소부의 재판기능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 신속성의 실현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와 목표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현재의 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지식재산센터를 지역 진흥원으로 발전시키는 안과, 특허허브도시의 정책적 지향점에 맞게 대전의 지식재산센터를 진흥원으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조직과 인력의 재편과 전문화를 통해 수행 업무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실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적재산권 연구소 설립

대전은 이미 여러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 및 특허관련 기관의 모범적인 혁신주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와 함께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까지 자리하여 특허사법, 행정, 기술, 산업, 교육 등이 한 곳에 모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유리한 여건을 갖춘 도시이다. 그렇지만 과학기술 특허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독일의 뮌헨시와 같은 레벨의 과학기술특허타운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현재 보다 더 집중적으로 특허법원에 집중시키고, 아울러 대전에 지적재산권연구소를 설립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21세기가 지식정보사회인 만큼 과학기술 및 특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토의 중심에 자리 잡은 대전시가 앞으로 지식정보사회의 세계적 중심축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21세기 기술전쟁과 특허전쟁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대전은 특허연구분야와 특허산업분야에 있어서 미진한 점을 가지고 있다. 특허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정보통신분야와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벤처기업들이 많이 창업을 하고 있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어 크게 기대되는 바가 있으나, 특허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대되는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뮌헨시를 보건대, 세계 최고수준의 막스플랑크 지적재산권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유럽특허청(EPO)을 유치하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은 물론 세계 최고의 특허타운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뮌헨시는 독일특허청은 물론 독일연방특허법원을 갖추고 있고, 변리사협회 본부와 BMW, 지멘스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이 존재함으로 인해 과학기술과 특허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모델로 살펴보건대 10,000여명이 넘는 내·외국인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예산규모 만도 약 15조원을 넘고 있다.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거의 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독일의 세계적 경쟁력은 이곳 연구소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외에도 민간

기업이 예산을 공동 부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대전시는 이와 같이 뮌헨을 모델로 하여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특허허브도시로 성장코자 하는 미래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허브도시의 핵심은 역시 독일 뮌헨의 예에서처럼 지적재산권연구소의 존재 유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와 같은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특허행정-사법-교육-산업 등 모든 분야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라고 하는 용(龍)의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연구소의 설립이야말로 용의 눈을 그려 넣는 화룡점睛(畫龍點睛)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이 한국-중국-일본을 잇는 동북아시아의 특허중심이 되어 21세기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전특허허브도시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인프라로서 지적재산권연구소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기관에 설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관철시켜야 하겠지만 이에 앞서 대전 지역의 과학기술계와 특허 관련 단체의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7장 추진사업 제안 및 로드맵

1. 추진사업 제안

(1) 거버넌스 체계 구축

1) 사무국 설립

□ 주요 사업내용

- 특허허브도시 조성 목표를 지향하며 궁극적인 추진기구인 재단 설립에 앞서 최단기간에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기획사무국을 설치
-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추진
- 독립적인 기획사무국 설립 : 특허 관련 기관들의 협력적 역할/기능 정립
- 특허허브도시 지향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집중-분산 기능, 공동 협력사업 창출 기능 수행

□ 사업개요

- 사업명 : 특허허브도시 대전 기획사무국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 사업기간 : 2017-2018년

2) 특허허브도시 진흥재단 설립

□ 주요 사업내용

- 대전이 동북아 허브도시로서의 이미지, 브랜드 형성에 주도적인 기능 수행
- 현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위상에 걸맞는 특허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특허청, 특허법원 및 대전광역시(대전지식재산센터) 등 공공부문 중심의 추진주체를 구축함

- 대덕연구단지연구기관, KAIST-충남대특허법무대학원, 한국특허정보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관련기관 참여
- 지역내외 특허관련 민간사업체와의 연계지원체계 구축, 총괄하는 기능 수행
- 정책 인텔리전스 기능 수행 : 특허관련 복잡다기한 환경분석, 성과창출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의 정책결정,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 대응
- 개방적 정책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명 : 특허허브도시 진흥재단 설립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및 유관기관
- 사업기간 : 2019-2020년

(2) 특허 전문화지구 지정 육성

1) 특허전문화지구 선정

□ 주요 사업내용

- 특허 관련 기관의 공간적 입지 여건 등을 감안, 공간적으로 종래의 클러스터 개념의 특허 집적지구 성격의 특허전문화지구를 선정하여 공간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전문화지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지구 선정
- 기능공간으로서 특허행정, IP창출, 교육·홍보, 사업화지구로 분류, 존(Zone) 설정

□ 사업개요

- 사업명 : 특허전문화지구 지정 육성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 사업기간 : 2017-2018년

2) 수도권 관련기관 및 사업체 유치

□ 주요 사업내용

- 국제적인 특허도시로서 동북아 특허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관련기관과 사업체의 지역내 유치가 필수적임
- 기관 및 사업체의 지역유치 전담조직을 구성
- 민간 사업체의 유치시 행·재정적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 정주여건 조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 검토

□ 사업개요

- 사업명 : 수도권 관련기관 및 사업체 유치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 사업기간 : 단기(2017-2018년) 및 중기(2019-2021년) 사업 구분하여 추진

3) 특허청 협력사업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특허청이 지금까지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업(행사)의 지역전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유도
- 특허행정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내 특허 관련 인프라를 활용 사업 전개
- 특허청 주관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우수 상표권 공모전」, 「특허청 지식콘서트」, 특허청 주관 디자인세미나 등 행사의 정기적인 대전 유치

□ 사업개요

- 사업명 : 특허청 주관 행사 대전유치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특허청
- 사업기간 : 2019-2-2021년

4) 특허법원 국제특허관할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현재 국제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가 도입될 예정으로 후보지 검토중
- 글로벌 특허소송의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포럼쇼핑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 필요성 대두
- 지역소재 특허법원내 국제재판부 도입 반드시 관철
- 이에 대비한 글로벌 특허 전문인력의 확보 등 역량 확충

□ 사업개요

- 사업명 :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특허법원
- 사업기간 : 2017-2018년

(3) 교육 및 홍보 확산

1) 지식재산 교육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대전의 특허허브도시로서 지향하는 도시상(도시이미지)에 관한 구체적인 형상화 교육 진행
- 이러한 교육은 이후 성인이 되어 성장하여야하여 대전이 자연스럽게 특허

허브도시로서의 인식이 보편화되고 도시의 브랜드로 자연스럽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티브가 될 수 있음

-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을 활용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적용, 교육환경 제공
-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협력하에 집중적인 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사업명 : 초등교육 및 중등 자유학기제 교육 활동사업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교육청
- 사업기간 : 2017-2018년

2) 특허허브도시 대전 홍보 확산 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 및 대내외 홍보 확산 사업 전개
- 홍보 확산을 위한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해외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로 발전 모색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해외 사무실 대전 유치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개도국 교육 일정에 추가적으로 관내 지식재산 관련 기관 탐방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전의 특허허브도시의 국제적인 이미지 확산 기회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특허허브도시 대전’ 홍보 확산 사업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 사업기간 : 2017-2018년

(4) 특허허브도시 브랜드 구축

: 특허허브포털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지식재산이란 관점에서 대덕연구단지, 특허청, 특허법원,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연수원 등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핵심자원이며 인프라임
- 국가적 자원인 특허(지식재산)에 관한 대전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대전의 도시적 가치를 증진
- 각종 특허 관련 국제 포럼의 지역 유치와 이에 따른 포럼의 경제적 가치 활용을 통한 대전의 MICE산업과의 연계 확대
- 특허법원이 관할집중된 동북아 3국의 대전-오사카-베이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관련 「동북아 포럼」을 창립하여 정례화 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특허허브도시 브랜드 구축사업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 사업기간 : 2019-2021년

(5) 지식재산 관련 전문기관 역량 강화

1) 대전지식재산센터 위상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대전이 특허허브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해서 현재의 대전지식재산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
- 현행 중소기업 지원 위주의 기능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전반의 영역 확대 필요

- 센터를 진흥원으로 격상시켜 전문성과 예산을 확충, 특허허브도시에 걸 맞는 위상과 기능 부여

□ 사업개요

- 사업명 : 대전지식재산진흥원 확대 개편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특허청
- 사업기간 : 2019-2021년

2) 국제적 전문 지적재산권연구기관 설립

□ 주요 사업내용

- 21세기 기술전쟁과 특허전쟁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 수준의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
- 독일의 뮌헨시의 세계 최고수준의 막스플랑크 지적재산권 연구소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제적 전문 지적재산권연구기관 설립
-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특허행정-사법-교육-산업 등 전 분야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유도
- 일차적으로 현재 서울에 입지해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대전 이전을 추진하고, 국제적 전문 지적재산권연구기관으로 역량 확충

□ 사업개요

- 사업명 : 국제지적재산권연구원 설립 운영 사업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특허청
- 사업기간 : 2022-24년

2. 사업 로드맵

구 분		단 기 (2017-2018년)	중 기 (2019-2021년)	장 기 (2022년 이후)
		도입기	발전기	성숙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무국 설립	조례 제정		
		사무국 설립 및 출범		
	특허허브도시 진흥재단 설립		진흥재단 설립	
			정책 인텔리전스 기능 확보	
		개방적 정책네트워크 구축		
특허 전문화지구 지정 육성	특허전문화지구 선정	전문화지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수도권 관련기관 및 사업체 유치	전담조직 구성		
			관련기관 유치	
			관련사업체 유치	
	특허청 협력사업 추진		특허청 주관 각종 행사 대전 개최	
특허법원 국제특허관할 확대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			
교육 및 홍보 확산	지식재산 교육사업	초등교육 및 중등 자유학기제 교육 활용		
	특허허브도시 대전 홍보 확산 사업	일반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확산 사업 전개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확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해외사무실 대전 유치
특허허브 도시브랜드 구축	특허허브포털 구축		대전지식재산포럼 창립	
			동북아 지식재산포럼 정례 개최	
지식재산 관련 전문 기관 역량 강화	대전지식재산센터 위상 제고		대전지식재산진흥원 확대 개편	
	국제적 전문 지적재산권연구 기관 설립			대전국제지적재산권 연구소 설립

참고 문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4), 정책자료집 지식재산 강국의 주춧돌을 놓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3),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활성화 방안 연구.
- 김남경(2013), 미국의 특허소송 현황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김성기(2014), 유럽 통합 특허법원 설치 합의의 내용과 전망.
- 김승희(2010), 지역 MICE 산업의 경제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통계청.
- 김현우(2012), 글로벌 특허분쟁의 현상과 국내 전망, 고려대학교.
- 김현중(2013),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연구.
- 대전발전연구원(2014), 대전 지식재산서비스기반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 류태규외 3인(2015),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 방안, 지식재산위원회.
- 손경한 기술과법연구소 부소장, 특허법원에 바란다.
- 손수정외 4인(2013), 지식재산 인프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신상철(2015),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동향과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 이규홍(2015), 특허소송 관할집중과 법원의 향후 과제.
- 이수완(2006), 특허법원 판사 미국특허제도 및 특허재판제도 개요.
- 이재우(특허청), 특허소송의 전속관할에 대한 소고.
- 이주완 하나은행연구원(2014), 급증하는 특허분쟁 경향 및 대응전략.
- 전성태, 이유리나(2014),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소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정연우(2011), 국제 특허분쟁지도(미국편), 특허청.
- 정차호(2011), 과학과 기술. 특허사법제도의 선진화.
- 지식재산위원회(2015),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협회(2010),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싱가포르.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협회(2011), 국제 IP동향 연차보고서.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협회(2012), 국제지재권 동향 연차보고서.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협회(2013), 국제지재권 동향 연차보고서.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협회(2014), 해외 특허분쟁 대응 로드맵.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협회(2015), 국제 IP분쟁 이슈 보고서.
- 특허청(2015), 국제 지재권 분쟁동향 연차 보고서.
- 특허청(2013), IP5 각 청의 특허조화 관련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특허제도

국제조화 대응방안.

- 특허청(2009), 전문자격사 제도선진화 추진을 한 변리사 제도 장기 발방안 연구.
- NIPA(2014), 기술동향보고서 최근 특허분쟁 동향.
- SERI 경제포커스 395호(2012), 특허소송 관할집중과 법원의 향후 과제.

정책연구보고서 2016-42

**특허법원 관할집중에 따른
대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발행인 유재일

발행일 2016년 6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2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ISBN:

인쇄: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